

2026 학교급식 기본방향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학 교 급 식 보 건 과

경기교육 방향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비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목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기조

자율 균형 미래

4대 정책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



기본방향

- ▶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하고 성장하는 신뢰받는 학교급식 운영
- ▶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 ▶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 확보
- ▶ 학생이 건강한 삶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자율선택급식 정착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정책목표

- ▶ 학생 및 급식관련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 ▶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선택급식을 다양화하여 미래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 인건비 분리를 통한 적정 식품비 확보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 건강한 식생활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주도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추진목적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급식 지원 ·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건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실화	·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다양화 · 학생의 바른 인성과 식생활 주도성 함양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안정적인 급식운영 지원	·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 내 인건비 분리로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 ·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지원 확대
학생 건강 맞춤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학생 건강 맞춤형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학교 역량 강화 지원 · 학교급식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생 주도·실천 중심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기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contents

202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3
II.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13
III.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25
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39
V.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45
VI. 학교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55
VII.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67
VIII. 2026년도 사업별 보고사항	75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학교급식(무상) 지원금 정산보고서	121
[참고자료 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124
[참고자료 3] 학교급식 관련 법규	125
[참고자료 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조례	127
[참고자료 5] 학교급식 설문조사(안)	128
[2026년도 기본방향 변경사항 요약]	132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기본방침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현황

- (전국)2024학년도 (’25.2월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12,047교(100%)에서 학생 518만명 급식 실시
- 현재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점심) 제공(교육청·지자체 추진)
- (경기)2025년 전체학교 2,584개교(100%)에서 학생 145만 8천여명 급식 실시

추진방향

1.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가. 학교급식의 운영원칙(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학교급식은 수업 일의 점심시간에 영양 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 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인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2. 학교급식 위탁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가.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분 위탁¹⁾ 또는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²⁾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초·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승인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법제처, 2015.8.21.)

나.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1항)

- ①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 ③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1) 부분위탁 :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2) 학교급식위원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부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기능 수행

〈수업일의 점심시간 외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1) 수업일의 점심시간 외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가. 조식, 석식, 주말, 방학 중 급식 운영에 따른 조리종사자 교대근무 체계 마련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나. 급식 인원수 부족으로 현격한 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급식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1]의 가, 나에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제출

3)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로 안전 상정 후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

-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다. 급식시설 공사, 위탁급식 등의 사유로 외부운반급식 시 운영 및 위생관리 철저

- 운반급식 공급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적정한 업체 선정 및 계약
 - 조리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와 조리 능력 확인
 -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보존식 보관,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확인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보상 내용 등을 특약조항에 명시
- 운반급식 공급업체 불시 위생점검 등 학교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체계 마련
- 급식시설 현대화 등 공사로 인해 위탁급식(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반드시 관련 업체 특별점검 요청(학교→ 교육지원청 → 업체 소재 자치단체)

라.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철저

3. 학교급식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강화

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³⁾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 보장 및 학생 참여 활성화
 -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반드시 비조리교 관계자 포함하여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시 자문 활동 수행
- ※ 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을 간사로 참여

3)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안) 및 규정(안) 예시안 참조

-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 구성·활용
※ 학부모 급식모니터 활동 참여 시 개인위생 조치 철저 및 원활한 조리업무 진행토록 협조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위원회의 학부모가 학교급식 관련시설(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시 식품관련 전문가인 영양교사·영양사 동행(참여) 협조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하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유지되어야 함

나.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누리집](#), 식생활교육관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급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및 매 학년도 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제출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제5차)의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5번 참고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학교급식 영양, 위생·안전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 운영계획 공개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설명회](#)’ 등 급식 과정 공유를 통해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 [학교급식 대국민 홍보사이트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운영\(www.sfic.go.kr\)](#)
※ 급식공개일 등 운영 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별도 예산 책정(식식회 등의 식품비, 운영비 등)
- 학생에 제공되는 식단표, 실제 급식사진을 학교 [누리집](#)(학부모 모바일 앱 등 포함)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
※ 식단표 메뉴명은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마약’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다. 도교육청 자료실 활용(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참조)

-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자 누구나 탑재된 자료 활용 가능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학교급식보건과) 접속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업무매뉴얼 → (초등/중등) → 제5편 학교급식 접속
※ [경기교육모아](#) → 교직원 → 교육급식정보나눔방 접속
- 학교급식 각종 매뉴얼 및 지침서 탑재

4.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표창

가.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나. 급식운영 우수교(업체)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우수교(업체), 유관기관,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 친환경학교급식 추진, 교육급식운영, 영양·식생활교육 등 유공자(기관) 표창
- 유치원급식 운영 유공자(기관) 표창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 사용 철저

가. 급식일지, 주간 또는 월간식단, 식재료 원산지 관리 등

나. 학교급식 개시보고(신설학교), 학교급식 변경보고(기존학교) 철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 매 학기 초 및 급식현황 변경 시 학교기본정보, 급식인원, 학부모참여인원(급식일지), 급식인력 현황 등 수정 입력(서식11)

6.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철저

가. 유통기한(소비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서 재사용 금지

나.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NetT, G2B 등)를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 적극 권장

- 폐유 처리과정 검수 철저: 폐유량 확인, 감사과 비리(고발성) 신고(2021.9.)

다.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급적 학교 급식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및 위생 용품 구입 등 조리종사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및 홍보 강화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나. (현황) 2024년 도내 급식학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61,226톤) 및 처리비용(108억원)

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책)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

- 관계기관(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협의를 통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 추진

- 지자체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공동계약 추진
- 잔식 기부 학교 관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

- 급식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레시피 개발, 조리종사자 조리기술 향상 등)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우수사례 발굴·공유

※ 경기도교육청 제작 영상* 및 자료** 참고

* 경기도교육청 블로그/경기도교육청 YouTube (「만드는 노력은 다 같습니다」, 「잔반 줄이라~자나」)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사례집」 게시 안내 (학교급식보건과-14202, 2024. 12. 18.)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여부 확인

라. (학교 대책)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감량화 및 식사지도(점심시간은 매일 1교시씩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영양교사영양사와 조리종사자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발생 원인별로 전처리쓰레기(과일껍질, 채소껍질, 국물에 사용된 다시마, 멸치 등), 일반쓰레기(뼈, 조개껍질 등), 순수잔반(배식하고 남은 잔반)으로 구분·관리 방안 모색

- 매주 1일 이상 “잔반 없는 날”을 지정·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방안 강구

- 체계적인 배식량 관리(샘플게시, 표준 배식도구 사용, 정확한 배식량 안내 등)

-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은 푸드뱅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근 학교간(마을단위) 공동계약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

-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발생량 최소화

- 일부 학교는 종량제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거차량으로 반출하거나, 잔반처리기 등을 활용하여 처리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 방식 “종량제” 실시 의무화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관련법령(하수도법, 폐기물처리법 등) 및 지방자치 조례(수질관리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노력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처리비용 계약 단위를 Kg(무게)으로 명시하여 계약 체결
 - 위탁처리 시 정확한 발생량의 무게가 측정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항 명시(권장)
 - 음식물류폐기물 불법 처리 시 계약해지 특약 명시
 -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
 - 음식물쓰레기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거 횟수 조정(가급적 매일 수거)
 - 처리장소는 악취 발생 및 해충 유입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
 - 위탁처리업체 수거 시 운반 차량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예방 철저
- ※ 「2022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 안내」(학교급식협력과-7097, 2022. 8. 29.) 참고

8. 학교급식 설문조사 조사 안내

가. (근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제8조, 2021년 경기도의회 건의사항, 학교급식 운영 평가

나. (목적) 학교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급식운영 개선 및 반영 노력

다. (방법) 년 1회 조사 실시 및 공개해야 하며 전체 학생수 30% 이상 실시 권장
 ※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는 자율선택급식 설문조사로 같음(추가 공문 안내)

라. 유의사항: 병설유치원, 비조리교의 급식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II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II.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기본방침

- 선제적 학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단계 신속 대응체계 확립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급식여건 조성
- 학교급식 점검체계 개선 등으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제고

현 황

- 2000년부터 HACCP 개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발간·보급(2000. 12월, 제5차 개정 2021. 2월)
- 2003년부터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추진방향

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 가. 방학 기간을 이용한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기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학기 시작 전 개·보수 완료 조치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 나. 10년 이상 경과 및 지하층에 설치된 조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 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HACCP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차적 계획수립 및 지원
※ 오븐기 등 급식기구는 국산제품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제품 및 계약 권장(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30927, 2022.11.11.)
- 다.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5)을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시설 개선

- 급식실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설계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
- 신설학교, 현대화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급식실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2024. 5. 16.제정)
 - ※ 급식실 도면 검토 시 영양교사·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참여 권장
- 급식실 증축 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및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을 근거로, 적정 면적을 산출하여 기준 면적이 확보되도록 추진
- 급식시설 개선 공사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 휴게시설의 설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근로자 배치교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필수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년 8월 시행)
- 남성 조리 종사자의 탈의 및 샤워 여건 보장을 위해 성별(남, 녀)로 휴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학교급식보건과-11294, 2023. 11. 27.)
- 학교급식 기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을 할 수 없으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적정 처리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또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불용결정 가능
 - 전처리 식재료 사용으로 불필요해진 기구류 및 유사 중복 기능 기구의 구입 지양

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노력

- 신설학교 및 현대화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쾌적한 조리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능률적인 급식시설·기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 ※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적용하여 환기설비 설치
 - ※ 그리스트랩 적정 설치(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설부서 협조)
-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기구 등 적극 도입
- 학교급식 종사자 휴게실 적정면적 확보 및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

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소요예산 확보

- ※ 급식실 휴게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급식실 휴게공간 공기청정기, 제습기 설치(2021년 1분기)
 - 안정적인 휴식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급식실 휴게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노력(2021년 4분기)

- 지역 내 노후 급식시설(10년 이상) 및 학생수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행재정 지원 노력
 - 현대화사업 대상교와 긴밀한 소통 및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적기 사업 추진
 - ※ 긴급한 사업추진으로 예산확보 및 사전이행절차(자체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미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 급식실 현대화사업 계획 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환경 개선비, 지역현안사업비(특교), 지자체 대응사업 등 예산확보 노력
- 바.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관(식당) 공간 확보 방안 강구
- 저학년 전용식당 마련으로 학부모 배식 도우미 반강제적 동원 금지
 - 식당시설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교육적인 측면에서 식당 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을 활용한 식당 확보 방안 강구
- 사.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를 위해 조리실 규모에 적절한 냉방시설 확보
- 조리장내 적정 실내 온도 **유지**(냉방시설 등을 통해 가능한 낮은 온도 유지)
 - 기설치 된 냉방기(에어컨 등) 상태 수시 확인 및 개선, 공조장치 및 전기식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아. 「2025 통합 운영학교 관리 운영 도움 자료」[학교교육정책과-3971(2025.7.1.)]를 참고하여 대규모 통합운영학교는 급별 급식시설 분리 설치 검토

2.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안전점검 강화 및 점검체계 개선

- 가.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강화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학기별 1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등 연간 실시 횟수 조정 가능
 - ☞ 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결과를 NEIS 시스템에 입력·관리 → 학교 조회 가능
 -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시 ‘급식 이물질 혼입 예방 관리 사항’ 등도 포함하여 확인하고 취약 학교 등에 컨설팅 지원
 - ※ 특히, 2~3식 제공학교, 급식인원수 과대학교 등에 급식 위생 및 이물관리 컨설팅 지원

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체계 개선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컨설팅단’ 운영, 컨설팅활동 참여 가능한 학부모 등 민간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 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이 가급적 컨설팅단원 1명과 함께 2인 1조로 컨설팅단을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 컨설팅 실시(2014년~)
 - ※ 컨설팅단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구성, 명예식품위생감시원증 소지자 우선, 컨설팅 요령 연수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소정의 컨설팅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신규 영양교사·영양사 배치교는 신학기 급식 운영 2개월 내 점검 실시 권장
 - ☞ 점검 시 전반적인 업무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모든 학교에서 방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급식시설·기구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해 급식종료·급식개시 이전에 청소 및 소독 등 실시
 - ※ 방학 중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여름은 곰팡이, 겨울은 동파 등) 지적(23년 국정감사)

다. 학교급식기구 등 미생물검사 실시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조리교)에 대해 연 1회 실시
-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 의뢰

라. 학교 밖의 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위탁급식 도시락업체 등 대상으로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적극 협조
 - ※ 식약처 주관, 연 2회 개학시기(2~3월, 8~9월) 등 특별점검 실시
- 각급학교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종류의 비조리제품(완제품) 제조·가공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요청
 - ☞ 교육청 주관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지적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처분

마. 학교급식 및 관련시설 점검결과 사후조치 철저

- 「학교급식법」 위반자 징계(제22조) 및 과태료(제25조) 규정 준수
-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과태료 부과
 - ※ 점검결과 지적→시정명령(서면)→차기 점검결과 미이행 시 징계(과태료 부과)

- 식재료공급업체 등 급식관련 시설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자 처분 강화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지적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처분 시행

※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적절한 조치 강화

3.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가.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 후 조리작업 참여 조치

* (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독 등 적절한 치료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함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마다 1회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건강진단 실시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

※ (참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조리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지원 인력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 안내(학교급식보건과-6091, '23.7.31.)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 적용사항>

구분	기존	학교급식 분야 적용사항('24.1.8.시행)
검사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검사 기간	유효기간(6개월)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6개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별도 연장기한 없음	별도 연장기한 없음
수수료	3,000원	지방자치단체 별 수수료 책정(24.11.23.부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8.시행), 학교급식보건과-409(2024. 1. 12.)

나. 학교급식 이외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학교급식 외부 반출 금지

- 부득이하게 외부음식 반입 시는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 및 보존식 보관
- 공동조리 운영 또는 배식하지 않은 음식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반출은 가능

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급식업무 담당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별 학교급식분야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교육청 단위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전 별도 교육실시

- 교육지원청은 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시 HACCP 적용·이행 및 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하여 실시
 -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신규 조리종사자 및 비조리교 세척원 대상 연수 실시
- 학교는 학생, 교직원(조리종사자 포함), 학부모 등 대상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 방학일, 졸업일, 운동회 등 급식이 없는 근무일은 위생안전교육시간으로 활용
 - ※ 납품업체에 종사자 대상 특별 위생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요청

4.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강화

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중 급식원인 추정 발생 건수와 환자수 지속 발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발생 건수	13	21	25	21	30
	발생 환자수(명)	401	708	1,102	978	1,470
경기	발생 건수	2	3	6	3	7
	발생 환자수(명)	46	182	303	131	701

※ 주요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 급식이 시작되는 신학기 및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다수 발생
-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접촉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 속출
 - 환자 가검물에 의한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이 빠르고 면역력이 약한 아동 특성상 다수의 환자 발생가능, 개인위생 관리 철저

나. 교육부·식약처 협업과제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추진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
 - 영양교사 등 추가배치 및 근로기준법 준수하도록 교대근무 체제마련
 -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조·중·석식 위생관리 책임자를 각각 지정·운영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학교급식 HACCP 적용 내실화
 -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에 대하여 우선 실시
 - 학교의 자주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 및 HACCP 시스템 적용 방안 맞춤형 컨설팅

다. 식중독 감시 및 식중독 의심환자 신속 보고체계 확립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NeaT)」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전파 등 대응체계 운영

- 신설학교는 NEIS의 학교 코드값,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를 시스템담당자에게 부여받음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집단환자 발생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영양교사·영양사가 포함된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 후 ‘식중독 의심’으로 판단 시 즉시 보고(신고)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 ※ 은폐 또는 미신고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청은 관계자 엄중 문책

라. 초동단계 신속 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즉시 가동,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 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업무에 활용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 치료와 급식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 일정 차질 최소화
 - 비상 시 식중독 대책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 사전 교육 및 안내
 - 급식 중단, 오염식품 사용금지, 도시락 지참 및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대책 마련, 급식 재개 시는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협의 등
 - ※ 교육(지원)청 식중독 업무담당자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적극 참여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급식소 현장 보존, 가검물 채취, 학생들 귀가 보류(보건소 협의) 등 원인규명 적극 협조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 보존식 보관 및 관리 철저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 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 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 조리·제공된 매회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담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보관

바. 학교 식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관련 업체 제재 및 원인 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 적용철저 및 홍보 강화
- 식품위생법령 및 학교급식법령상 처벌(징계)기준, 식중독 사고 및 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처분기준 엄격 적용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 적용

사.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5.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강화

가.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굼 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제는 용량에 맞게(또는 기준 사용량 이하로) 사용하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되 친환경세제 및 수산화나트륨(NaOH) 1% 미만 사용 권장

※ 식기세척제 성분(수산화나트륨) 안전성 확보 대책 지적('13년 감사원, '17년 국정감사)

- 수산화나트륨(NaOH)이 5%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등에 따른 ‘유독물질’⁴⁾로 식기세척제로 사용 불가
-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 철저
 -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 납품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식판 세척 전 불림 물 일정온도 유지, 오염 물 수시 교체 등 애벌세척 철저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굼 작업 실시
-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행굼 기능이 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 도어형 또는 1탱크형 사용학교는 행굼 작업 강화 등 개선방안 강구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제3조 [별표1]

나.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

- PH시험지 등을 이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확인검사 실시
 - ※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 페놀프탈레인용액 및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 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검사내용(실시일, 검사결과 등)을 CP2 기록지 하단에 기록 유지
- 검사결과 세척제 잔류가 확인된 경우, 행굼 작업 강화 및 세척기 이상여부 확인 등 개선대책 강구
 - ※ 검사로 인해 시약이 묻은 식기 등은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실시

다. 채소 및 과일류 소독제 사용 시 준수사항('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살균·소독제로 승인하여 고시한 식품첨가물로 표시된 제품 사용
-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적정 농도 반드시 준수(소독제 희석농도는 test paper의 색변화 또는 농도측정기로 확인)
- 소독수 제조장치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소독제(소금, 염소산 등) 교체, 신학기 준비기간 등에 업체를 통한 검·교정 요청 등 관리 철저(학교급식협력과 -1306, '22. 2. 15. 참조)
- 염소소독 시 5분간 침지한 후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행굼 철저

6.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가.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 튀김요리 등 준비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 전기기계·기구 등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조리기기 사용 시 근로자 이탈금지, 소화기(K급)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학교급식보건과-3760, 2025.6.19. 참조](#))
- 급식실내 작업 전·중·후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실시
- 식기세척제 세제 등 중량물 운반시 운반캐리어 사용 및 적정량 운반
- 쌀, 튀김유, 양념류 등 10Kg 단위 구매사용권장
-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 기본수칙 및 안전표식 게시
-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작동 방법 및 관리책임자 지정·게시 및 안전보건 표시 부착 철저

-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
-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오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튀김·구이·부침 등 조리 횟수 조정/튀김류는 주 2회 이하 권장)

※ 단, 급식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기(6~9월) 튀김·전 요리는 오븐을 이용하여 조리하고 식용유 가열, 부침기 사용은 주 1회 이하로 운영 권장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급식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학교급식보건과-6422(2025. 7. 10.)」

- 급식기기 및 기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조리 종사자의 작업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열탕 소독 작업은 지양

※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방학 중 대청소 시 급식기구 삶기 작업을 하지 않는다.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나. 급식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 적극 안내

- 급식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요양 및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다. 학교급식 관련 학생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식재료 배송 시 납품차량 안전운행, 배식 중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예방, 배식차 운반 시 전도방지, 승강기 시건 확인 등 학생들 각종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학교급식 관련 안전교육 실시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Ⅲ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Ⅲ.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기본방침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심의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운영현황

-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매뉴얼 개발·보급('14. 9월)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www.schoolhealth.kr>(학교급식-급식운영)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식재료 표준체계(분류체계+공통코드) 도입 및 현장 적용으로 우수 식재료 사용기반 마련('20년~)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격정보 및 물가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년~)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정보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는 '학교급식 통합플랫폼'에서 제공(www.sfic.go.kr)
-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해역-생산-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일본 8개현(후쿠시마 등)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13.9.~)

추진방향

1.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특히,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의무화('13. 11. 23.~)
-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정도)된 김치류 제공 적극 권장

- 학교에서 김치를 구매하는 경우 상수도 사용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 권장

나.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표시대상)

품목	표시대상(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9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찰쌀, 현미, 찌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수산물 (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챙이, 전복, 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표시방법) ①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에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표를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게시 및 ②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 포함)으로 통보하고 **학교 누리집**에 추가 공개

※ 미표시 및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대상

※ (농축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참조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 [원산지 표시] 참조

※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을 인지하여 표시하고, 검수 시 확인 철저

다.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원패스’ 활용하여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축산물검수 원패스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과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 연계(` 25.12월~)**

-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양교사·영양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한 연수 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지역사무소)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하여 식재료 감별 교육, 식재료 검수 요령 교육 실시

라. 축산물 이력제도 준수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수입산 소·돼지고기

※ 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 제외

- (준수사항) ①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및 ② 축산물 구매 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3년간 보관

* (표시·게시 방법) [방법1] 또는 [방법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방법1]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누리집에 게시 * (선택1)또는 (선택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선택1)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 QR코드 또는 URL을 누리집에 등록하여 이력번호 조회
	(선택2) 누리집에 축산물 조리시 마다 등록
[방법2]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장소에 게시	

※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www.mtrace.go.kr /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www.meatwatch.go.kr

2.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 의무화

가.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나.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와 품질등급,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및 품질등급,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검수는 영양교사·영양사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 식재료 검수 시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과 납품된 물품의 표시사항, 규격, 품질등급, 원산지, 신선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

☞ 인증제품(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친환경인증 등) 요구 시 해당 인증마크확인 철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3.1.1.시행)에 따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바 검수 시 확인

3.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및 적격 납품업체 선정관리 철저

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

추정가격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방법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수의견적) · 2인 견적시 예정가격 90% 직상위자 낙찰 (소액수의)
2천 초과 ~ 1억 이하	· 2인 이상 견적 제출, 예정가격 88% 직상위자 낙찰 (소액수의)
1억 초과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나. 식재료 입찰공고나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 금지. 다만, 학생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당위성 및 객관성 확보 후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

-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의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상표를 지정**
- 계약의 목적, 특징, 학교급식 정책방향, 품질인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특정 상표 지정가능 여부 질의회신, 행안부- 2018. 5. 8.>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 “7-나-1)-7)”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이하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하도록 하였고,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단서규정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 학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확보, 제품 선호도 반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식재료 구매의 경우라면 특정 상표 등을 지정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의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제품인 식품안전관리인증제품(HACCP 등),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 가공식품(KS인증 등), 저염·저당 등에 대한 비교표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의 목적, 특징, 학교급식 정책운영방향,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품 선호도,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 납품업체 선정 관리 철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학교급식 적용 사항 관련)**

※ 2025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 ※ (참고) 식육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심의
 - 공개경쟁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자격을 강화하여 우수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구매에 따른 급식 질 저하 우려 방지
 - ※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식재료 구매는 가능한 품목별(농산물, 축산물, 가공류, 수산물, 공산품 등)로 구분하여 전문업체로부터 구매 방안 강구
- 공급계약, 발주수량 외 추가 지원 및 무상요구 사례 금지
- **급식계약 관련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
 - * 품목, 업체명, 계약기간, 금액, 계약방법 등
-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금지
- 급식물품 대금지급은 1개월 단위 **결제**를 지양하고, 주1회 또는 월2회 대가지급
- 급식관련 기부 요구자, 금품향응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청렴도 강화)
 - ‘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적발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
 - 학교장은 업체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일체의 기부금품 수수 금지

라. 급식물품 기초단가 조사방법 개선

- 단위학교 영양교사·영양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재료 시장조사’를 지역단위(또는 전문기관 활용)로 확대 실시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격정보 및 물가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정보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는 ‘학교급식 통합플랫폼’에서 제공(www.sfic.go.kr)

4.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및 분할 수의계약 금지

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전면 사용 의무화
(2015년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식재료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이스(식단작성)-에듀파인
- NeaT시스템 연계 사용 원칙
- 쌀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 이용 가능
- 1개월 단위 구매계약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2~3개월 단위 작성 가능

* 예시) 식단계획 주기를 고려하여 방학이 연계된 기간(7~8월, 1~2월), 교육지원청 주관 가공품 공동구매,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한 사유로 심의한 경우 (쌀, 김치, 떡 등)

나.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분할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할발주 금지
- 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5.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

가. 자치단체(경기도와 시·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및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참여

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 10개 지역(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화성오산·부천·시흥·고양·김포·용인·평택)은 시군급식지원센터 주관 공동구매 실시

※ 공동구매 추진 관련 학교별 시행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운영계획 중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추진 식재료 공동구매 참여'에 대해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하여 동 사업 참여 추진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0호(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제2항제4호

- 공동구매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가격경쟁력 제고, 공급업체 사후관리
-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공동구매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세부품질기준 제시, 식재료 구매개선 및 확대 방안 강구

-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 적극 도입·참여
- 월단위 계약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단점 보완 및 소규모학교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
 - ※ NeaT시스템 상 종합계약 참여 학교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는 낙찰 총액 기준으로 주 학교에만 부과(2018. 1. 1.시행)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와 경쟁입찰로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공동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공동구매단’ 구성 →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14.9월)」 적극 활용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관 누리집에 해당되는 물품이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공표하고 동 내용을 구매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

6.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가.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aT, 조달청)이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선별(색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사요청) 또는 경찰에 고발
- 공정위 조사(수사)결과 불공정행위 확인업체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조치(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NeaT 등)에 등록하여 제재조치 강화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

나.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및 위생분야 합동점검 협조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공정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식재료 공급계약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은 식품위생분야 등 점검에 적극 협조

7.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유해·부정물품 납품업체 제재를 위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역학 조사 결과 귀책 사유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제재 조치 시행

- 식재료 구매 입찰 공고문과 계약 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 해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위반 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2014. 9월)」 적극 활용

다.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 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제재 조치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8.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가. 친환경·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HACCP인증품 및 지역 농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자치단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참여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억)	240	240	254	416	416	416	436	428	478	540	540	540	540	500	500	547
학교수 (교)	707	856	1,033	1,039	1,049	1,067	1,117	1,169	1,255	1,318	1,386	1,403	1,405	1,470	1,533	1,649
예산 편성 단가 (1식당)	초	280	280	323	300	330	246	246	280	284	295	311	-	-	-	-
	중	390	390	439	380	430	285	285	350	321	362	382	-	-	-	-
	고	-	-	-	-	-	-	-	-	-	385	402	-	-	-	-
	특	-	-	-	400	440	576	576	440	428	395	449	-	-	-	-
비고	도비 100%		도비50%, 시비50%													

※ 예산기준, 학교수는 쌀 제외, 2020년부터 고등학교 지원, 2022년부터 경기도청에서 급별단가 미산출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억)	160	160	160	160	160	160	200	160	180	210	210	220	226	226	226	211*
학교수 (교)	1,690	1,769	1,812	1,869	1,868	1,830	1,790	1,822	1,848	1,855	1,868	1,909	2,150	2,153	2,137	2,155
비고	도비 100%		도비50%, 시비50%													

* 2026년 본예산 기준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및 이용 협조

-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학교급식법」 제5조)
-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적극 협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2014. 9월)」 적극 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일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리차단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역 학교는 동 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 권장

※ 학교급식지원센터 총 14개 설치·운영

- 시군별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 13개(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수원시, 광명시,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 성남시,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평택시**),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1개(경기도)

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적극 참여 등 협조
- 자기고장 농·축·수산물 등(로컬푸드) 사용운동 전개 등 소비촉진 유도
-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계약재배 등 추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지역의 생산자 표시(실명제) 및 원산지표시(실명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라.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관계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인식 제고

-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시, 잔류농약·방사능 등 유해물질 및 유전자변형(GMO) 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수 실시

※ 참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7. 15. 시행 2020. 7. 15.)
-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4. 3. 20. 시행 2024. 3. 20.)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2022. 4. 21.)

9.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방식 개선

가.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前)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13. 국정감사 지적사항)

- 출하(생산)단계의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안전성)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실시
- 유통단계 농산물(신선편의 식품 등)의 잔류농약 및 미생물 검사,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안전성검사소) 또는 지방식약청실시
-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 정보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경우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등 조치

나. 유관기관과 연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실시

- 지자체와 협조하여 식재료 수거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농·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 한우유전자검사) 등에 의뢰

※ 특정업체에 분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및 계절적 특성(식재료 부패)을 고려하여
시료 수거(검사)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안전성검사 관련 협조사항(특수계약조건 명시)

예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근거 : 학교급식법 제19조 제1항]

- 기관별 검사 분석계획에 따라 급식일자, 납품업체 현황과약 등 협조·검사 실시

10.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가. 식재료의 생산·유통·운반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경우 식중독 사고와 직결되므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납품업체(대표자) 교육으로 위생관리 수준 및 인식제고

※ 납품업체에서 식재료 관리를 강화토록 특별교육 실시(식재료 HACCP 적용 철저,
세척·소독·행균과정 등 위생관리 강화, 사전 이물질 혼입 확인 등)

나.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의 건전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불량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과
더불어 건전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필요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Ⅳ.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기본방침

- 연령별로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 관리 역량 강화

운영현황

- 2018. 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식단 참고자료” 개발·보급
-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에 대한 인식 및 표기 부적정에 대한 개선 요구 ('19년 국회 등)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2호, '18.1.1.시행)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21.1.30. 시행)
 - ※ 202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보건복지부) 반영 및 유치원생의 영양관리기준 마련
- 병설유치원 유아에게 매운급식 제공 관련 진정('22.3., 국가인권위원회)
 - ※ 학교의 급식여건(조리원수, 급식시설·설비·기구 등)을 고려하여,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식단구성 및 조리법(음식크기, 온도, 매운정도 등) 개발 노력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교육부) 협업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 및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정보 연계('23.6.~)
- 학교급식 오븐요리 교육자료 및 교육영상 개발·보급('24.5.)
 - ※ 오븐요리 안내자료 및 레시피북(100개 요리), 교육영상(30편), 오븐기능 안내영상
 -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www.sfic.go.rk)-[급식일반]-[식단및레시피]

추진방향

1.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 가.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나.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다.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철 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 방법 활용

라.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2.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가.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나. 영양량이 표시된 식단표는 가정통보 및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간 식단표는 식사 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 등에 게시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 제16조)

- 위반 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종류> ①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계,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 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 공지방법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누리집에 안내, 주간 식단표를 식사 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에 게시

-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리가 어려운 메뉴(제거식, 대체식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도시락 지참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정보 활용 시 학교에서는 제공 식단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후 안내

- 교실배식의 경우 영양교사·영양사는 주간식단표(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표시)를 담임교사에게 제공하고 담임교사는 교실에 게시

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특정 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건강 교육 등 관리 실시

※ 학기 초 ‘학생건강실태조사’ 시 특정 식품알레르기 항목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 강구

(학부모에게 유사항목 반복조사에 대한 부담 해소)

4.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가.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수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

나.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염도계’를 구비하여 활용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V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V.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학생주도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한 식생활관리 역량 함양
- 학생·학부모 학교급식 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조성

운영현황

-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제정('21.10월)
-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22.6.29.시행)
-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8578('24.10.21.)
- 2025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5.1월)
-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안내 예정('25.2.)
- 학생 영양상담 지원을 위한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 및 「식생활 및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 고도화·활용안내('25.2.~)
※ 학교급식 정보마당(www.sfic.go.kr)-[학교 영양상담]-[식생활·생활습관 진단/매뉴얼/영양상담자료]
- 2026 경기교육기본계획(정책2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교육의 공적 책임확대/학생건강 통합지원)
-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안내(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교육활동)

추진방향

1.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

- 가. 「학교교육(운영)계획」에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계획’ 반영 및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활용(월 2회 이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

- ※ (교육부)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개발 안내('22.4.)
- ※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정책 기본 계획」 및 교육자료 개발·안내('25.2.)
- ※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강화(일부학교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중복 및 혼란 등 민원제기)

2. 기본 인성을 함양하는 학생주도 실천 중심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 가. 일상 속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수립·시행
- 인성 핵심 가치·덕목을 키우는 급식 연계 교육활동 운영으로 기본 인성 함양
 - 음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책임감 교육
 -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지원
- ※ 지역 교육과정 연계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운영 및 수업 연구 동아리, 수업나눔회 등 활동 지원

나. 지역특색 반영 학교 기반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중심학교>

지역특색 반영 학생주도 영양·식생활 교육 실천과 학교 자율성 기반 학교급식문화⁵⁾ 향상을 주도하는 학교

- 교육지원청은 지역특색 및 지역 교육과정 반영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및 영양·식생활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자체(식생활교육센터, 급식지원센터 등)와 연계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다.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

- 지역별 인근학교 단위(5-6교 정도) 연구회 구성·운영
-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식단연구, 식생활교육, 인성프로그램운영, 학생주도활동, 학교자율활동 등 급식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
-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 (월 1회 이상)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 지역교육청별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참여 활성화 추진

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한 인성교육, 학습 능력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홍보
- ‘아침식사 하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쌀 소비확대 협조
-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자기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애향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관심과 이해 증진

마.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잔반 줄이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 관련 정보제공

5) 학교의 영양·식생활 관련 환경 및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학교급식 및 영양·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가치, 신념 및 행동 양식[학교급식 진단도구 개발 및 질 제고 프로그램 연구/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 2022]

- 바. 급식과정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또는 학생참여 ‘식당이름 공모’ 등을 통해
 ‘배움’이 있는 공간으로 의미 부여, 영상장비(인터넷 활용) 등 교육환경 마련
 ※ (현행) ‘급식소’, ‘식당’ → (변경) ‘식생활교육관’ 등

사. ‘아침식사 하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 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 또한, 청소년 아침결식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아.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반영

자. ‘식생활교육실’ 운영 및 식생활 교육·체험공간 확충 노력

-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을 구성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을 식생활 교육 체험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변화하여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등 방안 검토(’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초
 조리능력 배양

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운영(75교, 자율선택급식 선택과제
 및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 추후 안내)

3.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영양상담실 운영

- 급식관리실 및 학교 누리집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대면, 온라인,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상담 실시 권장
- 영양상담실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확보(교실 1.5칸
 이상) 노력(영양·식생활교육실 겸용)
- 유휴교실 활용 등으로 영양상담실(영양·식생활교육실) 설치 방안 모색
- 영양연구실에서 상담 운영 시, 조리실을 경유하지 않는 동선 확보 및 별도의
 공간에 설치 권장

나.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 상담 희망 조사 및 영양상담 운영 계획 수립
 - ※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등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
-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활용
 - ※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 및 「식생활 및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 개발·안내('22.6.)
- 영양상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식단제공(대체식, 제거식) 시 사전에 학부모 동의 필요

다. 영양상담 관련 직무연수

-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영양교사·영양사 대상의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 영양상담 관련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집합 및 원격연수, 자율연수 등)

4. 학생 자치 활동 연계 학교급식 운영 참여 활성화

가. 2026년 학생주도 학교급식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단위학교-지역-도단위 학생 급식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 ※ ‘학생주도성’ 기반 학교급식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도교육청) ‘학생 학교급식 서포터즈단’ 운영
 - 학생의 학교급식 참여, 논의, 결정 → 급식정책 마켓 활성화
 - 학생 참여 급식 정책 토론회 등 운영
- (교육지원청) ‘학생 학교급식 서포터즈’ 구성
 - 교육지원청단위 ‘학생 급식정책 정담회’ 운영(연 2회)
- (학교) 학교 단위 학생 학교급식 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모색
 -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학교급식 활동 계획’ 수립·운영
 - ※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급식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학생대표 ‘학교급식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급식 운영 참여 확대
 - 학생자치회 주관 ‘학교급식 소통의 날(대토론회)’ 등 운영
 - 학급자치회 시간을 활용한 ‘급식 실천 약속 만들기’ 활동
 - 학생들의 의견 교류와 제안을 나누는 공간 마련
- ※ 학교 누리집, 학급 누리집, 식당 공간 내 상설게시판 마련 등

○ 학생주도 **학교급식** 활동 (예시)

- ※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 운영 및 급식활동 참여 적극 지원
- 학생주도 **학교급식** 운영 계획 수립
 - 교육과정 평가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학교급식 운영 관련 학생 참여 및 의견 반영
- 학생주도 **학교급식** 활동 기획과 실행
 - 학생자치회, 동아리 활동, 학생주도 봉사활동, 진학·진로활동, 학교행사 연계 활성화
 - 정기적 ‘희망급식의 날’ 운영을 위한 조사 활동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방안
 - 채식 및 저탄소 식단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실천방안 마련
 - ‘삶·심·소통’이 있는 식당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학생주도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활동 지원
 - 학교 축제 및 다문화 교육 연계 세계음식 식단 적용 조사 활동
- 학생 대의원회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안건 협의
 - 교육적 학교급식 문화 형성을 위한 학생 대의원회의를 통한 실행 방안 마련
 - 학교급식 문화 및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기본인성을 갖춘 ‘학교급식 문화’ 만들기 활동
 - 건강한 급식문화 만들기 위한 교육공동체 ‘급식 약속 만들기’
 - 급식약속을 기반으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급식 생활습관 성찰
 - 자율과 책임의 자율배식 및 선택급식 운영 방안 마련

나. 학생주도 영양·식생활교육 프로젝트 운영

- 건강한 식생활 주체로서의 실천적 경험을 통한 학생주도성 함양
- 개인의 식생활관리 역량과 공동체적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급식 과정 연계 영양·식생활 인성교육 프로젝트 운영
-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영양·식생활교육 활동 전개(급식 연계 진로, 동아리, 자율·자치활동 등)

다. 학생자치회 학교급식 활동 참여 적극 지원

- 학생자치회 연계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 방안 모색
- 학생자치회 급식 관련 활동, ‘교육급식부’ 설치 운영, 학교급식소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희망급식의 날 등 운영(학교급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다양한 참여 활동 운영)
- ※ 지역교육청별 학생 학교급식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연수 추진

라. 학생주도 ‘생태·환경 밥상의 날’ 운영

- 기후위기 대응 채식 및 저탄소 식단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실천방안 마련
 - ※ 단위학교 학생주도 활동으로 채식, 저탄소 식단 운영 주기 및 적용 방안 기준 마련 권장
- 경기도교육청 생태·환경 영양·식생활교육 연구단(생태·로컬푸드 교육) 개발자료(2021~2025년) 활용

5. 자율·선택급식 운영

-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 학생 기호도만을 고려하여 영양관리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 ※ 학생의 편식이 조장되지 않도록 자기주도적 식생활관리 역량 교육 실시
 - 학생의 성장에 맞는 배식 표준량 안내 실시
 - 1인 분량 샘플게시, 성장단계에 맞는 자율배식대 및 도구 사용 등
 - 학교급별 자율배식 운영 다양화 방안 마련
 - 자율선택급식 운영교는 학교 상황에 따른 자율배식, 부분 자율배식 등 운영
 - 학생주도 급식활동의 일환으로 ‘자율배식의 날’ 운영 등 다양화 방안 모색
 - 학생의 건강관리에 적합한 메뉴 선택과 적정 식사량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율배식 활동은 질서를 지키는 공중도덕, 친구에 대한 배려,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 등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학생의 건강과 기호에 따른 선택권 존중에 따른 식사(배식)량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책임감 교육 중요
- ※ 영양·식생활교육 연구단 수업자료 및 게시, 안내 자료 등 개발·안내(‘25.2)

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화

가.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2021.10.6.제정)

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주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실천방안 마련

- 경기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단(학교급별) 개발자료 활용(2021~2024)
- 학생주도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사례 안내

라.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교육)방안 마련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배식 조절대 비치 및 활용
- 학생 **학교**급식 활동(캠페인,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모색
- 학교 **누리집**,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7.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참여 활성화

가.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지역-도단위-교육부 단위 학부모 급식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 ※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급식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한 가정연계 '밥상머리 인성교육' 강화
- (교육부)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 운영
- (도교육청)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구성·운영
 -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급식 참여, 논의를 위한 워크숍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추천
 - 지역단위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활동 운영
 - ※ 교육지원청 단위 '학부모 학교급식 교육' 및 '정담회' 등 활동 강화
 - 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급식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운영

나. (도교육청)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공감 콘서트 운영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및 영양·식생활교육 정책 발전 방안 논의
 - 시기: 2026. 5월 예정
 - 대상: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다. 학부모 영양·식생활교육 아카데미 운영

- 건강한 식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강 증진 생활문화 정착
- 학교급식 문화 향상을 위한 학교급별 학부모 맞춤형 연수 운영

라.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대상 영양·식생활 이해 연수

- 학부모 대상 요리교실, 학교 누리집 및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 관련 정보 제공
- 학교급식 문화 향상을 위한 학교급별 학부모 맞춤형 연수 운영
- 학부모 학교급식 교육 동영상 활용 교육(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자료실)
- 학생 학교급식 활동(캠페인,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모색
- 학교 누리집,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VI

학교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Ⅵ. 학교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추진현황

- 학교급식경비 지원 현황
 - 2010. 03. 초등학교 농어촌 지역 전체, '10. 09.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확대
 - 2011. 03.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11. 09. 유치원 만5세 확대
 - 2012. 03.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확대
 - 2013. 0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전학년 확대(일부지역 미추진)
 - 2014. 0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전학년 실시
 - 2019. 0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학년 실시
 - 2020. 0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 2021. 03. (인가)대안학교 전학년 실시
 - 2022. 03. (공립)유(공사립)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단가 내 인건비 분리
 - 2025. 03. 학교급식경비 분담 대상 항목 중 기초지자체 분담 대상 인건비*를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담에서 제외
 - * 분담 제외 인건비: 초(동 지역), 중, 고, 공립 (인가)대안학교 ^{분담}인건비
 - ** 2025년 50% 분담 제외, 2026년부터 전액 분담 제외
 - 2025. 03. 급식교육공무원 인건비 교육지원청 통합지급 시범 운영
 - 2026. 03. 공립 급식교육공무원 인건비 교육지원청 통합지급 전면 시행

추진방향

1. **2026년 유·초·중·고·특수·(인가)대안학교 학교급식경비(식품비및운영비) 지원 계획**
 - 가.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인가)대안학교 재학생
 - 나. 지원 일수 : **사립유치원(207일)**, 공립유치원(190일), 초(190일), 중(185일), 고(185일), 특수(190일)
 - ※ 지원 일수 범위 내 각급 학교의 실제 급식일수 지원(학기 중 중식)

다. 지원 방향

-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학령기 학생에게 학기 중 학교급식경비(중식) 지원
- 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 사업 추진
- 물가상승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식품비(3.9%), 운영비(2.9%) 단가 인상

※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교섭 인상률 적용

단, 총액 단가로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및 사립(인가)대안학교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라. 2026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 : 학교 규모에 따라 구간별 단가 적용

○ (공립)유·(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

(단위: 명, 원)

학생수 구분		1 ~50	51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600	601 ~700	701 ~800	801 ~900	901 ~1000	1,001 이상
식품비	공립유	3,550	3,520	3,430	3,350	3,260	3,190	3,110	3,030	2,960	2,880	2,820	2,740
	초	4,480	4,230	4,140	3,940	3,840	3,750	3,650	3,550	3,470	3,380	3,290	3,240
	중	5,270	5,020	4,880	4,800	4,720	4,640	4,570	4,480	4,400	4,340	4,260	4,200
	고	5,430	5,370	5,270	5,180	5,090	5,010	4,920	4,830	4,760	4,670	4,600	4,570
	특수	유초	4,430	4,180	4,080	3,890	3,790	3,690	3,600	3,500	3,410	3,330	3,240
		중고	5,360	5,280	5,170	5,080	4,910	4,820	4,740	4,660	4,570	4,500	4,480
운영비	공립유	410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330	330	320
	초	600	600	580	560	540	520	510	490	480	460	450	440
	중	650	650	610	590	560	530	520	500	490	470	460	450
	고	740	740	710	680	660	620	600	580	560	540	520	500
	특수	유초	600	600	580	560	540	520	490	480	460	450	440
		중고	670	670	630	610	580	550	540	520	490	480	470
지원 단가	공립유	3,960	3,930	3,830	3,740	3,640	3,560	3,470	3,380	3,300	3,210	3,150	3,060
	초	5,080	4,830	4,720	4,500	4,380	4,270	4,160	4,040	3,950	3,840	3,740	3,680
	중	5,920	5,670	5,490	5,390	5,280	5,170	5,090	4,980	4,890	4,810	4,720	4,650
	고	6,170	6,110	5,980	5,860	5,750	5,630	5,520	5,410	5,320	5,210	5,120	5,070
	특수	유초	5,030	4,780	4,660	4,450	4,330	4,210	4,110	3,990	3,890	3,790	3,600
		중고	6,030	5,950	5,800	5,690	5,580	5,460	5,360	5,260	5,170	5,060	4,950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식품비, 운영비 지원 / LPG 사용학교 100원 별도 추가 지원

공동조리교 및 비조리교 각급학교 급식학생수 개별 적용

※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식품비, 운영비 지원 / LPG 사용학교 100원 별도 추가 지원

※ 단설유치원의 경우 수익자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유아학비로 급식비 집행 가능

○ (사립)유·(인가)대안학교

(단위: 명, 원)

학생수		1 50	51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600	601 700	701 800	801 900	901 1000	1,001 이상
구분	사립유	4,930	4,900	4,640	4,390	4,120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인가) 대안학교	초 5,450	5,370	5,230	5,070	4,910	4,860	4,760	4,710	4,660	4,610	4,550	4,520
	중	6,920	6,850	6,700	6,550	6,390	6,340	6,250	6,190	6,140	6,090	6,040	5,990
	고	7,430	7,350	7,150	7,000	6,930	6,880	6,850	6,800	6,760	6,740	6,720	6,700

※ 학교급별 식품비 지원단가 준수

마. 학교급식경비 지원 재원 분담(도교육청, 도청, 시·군)

- 공립유치원: 도교육청, 도청 분담
- 사립유치원: 도교육청, 도청, 시·군 분담
- 초등학교(읍,면): 도교육청, 도청 분담
- 초등학교(동), 중학교, 고등학교: 도교육청, 도청, 시·군 분담
- (인가)대안학교: 도교육청, 시·군 분담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저소득층 자녀): 도교육청 전액 분담

바. 2026년 학교급식경비 기관별 분담 비율 현황

(단위: %)

사군명	공립유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도시					
	교특	교특	사군	교특	교특	사군	교특	시군	교특	시군
수원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성남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양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과천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부천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광명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산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평택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군포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의왕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여주	100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화성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오산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사군명	공립유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도시					
	교특	교특	사군	교특	교특	사군	교특	시군	교특	시군
광주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하남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양평	100	70	30	100	-	-	75.91	24.09	72	28
이천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용인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성	100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김포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시흥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의정부	100	60	40	-	68.06	31.94	66.44	33.56	58	42
동두천	100	70	30	-	76.31	23.69	75.91	24.09	72	28
양주	100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고양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구리	100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남양주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파주	100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연천	100	70	30	100	-	-	75.91	24.09	72	28
포천	100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가평	100	70	30	100	-	-	75.91	24.09	72	28

※ (교특)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유·초·중·고 식품비 20.4%) 분담액

※ 의정부시: 2025년도 조정액 규모에 맞춰 시·군 분담비율을 상향하여 한시 분담비율 적용

사. 학교급식경비 지원 방법

- 급식인원수 산정 방법: 각급 학교 재학생수
- 급식비 지급 주기 : 분기별 소요액을 월별 분할 지급
- 분기별 월초(3, 6, 9, 12월) 급식학생수를 분기별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인원수로 결정[예시, 3월초 급식학생수 1,000명인 경우, 3~5월 학생 전출입과 상관없이 해당분기 동안은 1,000명으로 지원 대상 처리]
 - ※ 단, 분기 중 전체 급식인원수 대비 5% 이상 증감 발생 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인원수 변경 결정 가능
 - ※ 사립유치원은 전입·전출 반영, 학사일정(2월, 8월 포함)을 고려한 207일 지원
 - ※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음
-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하여 학교급식경비 단가 준수
- 급식비 단가를 감안한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균등한 급식의 질 유지

- 교직원급식비는 아래 제안단가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단가 확정
※ 단, 학생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생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원)	4,970원 이상	6,230원 이상	2025년 대비 280원 인상

- 위 단가는 2025년 교직원 기준(본예산) 제안단가에 2026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기준 1인당 평균단가(초·중 학교급식경비) 증가분의 평균을 반영하여 산출
- 학생급식비가 제안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필요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 가능
- 공동조리교·통합학교·특수(통합)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안단가를 감안하여 교직원 급식비 단가 결정
※ 사립유치원 적용 제외
※ 공동조리교 / 비조리교의 교직원 급식비는 동일하게 적용

아. 학교급식경비 지원범위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현장학습일 등에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빵·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위탁 학생에 대해 이중 지원되거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위탁시설의 급식비 실비 지원 가능
※ 단, 위탁급식 단가 내 실비 지원
-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1식당 7,150원 한도 내
- 위탁학생이 국비 등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단, 개인에게 입금 불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비 처리

1) 가정순회학급 등 학생 급식비 처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급식비는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학교급식이 어려워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건강 장애학생 및 가정순회 학급 학생의 급식비는 급식일수에 따라 지원단가*를 매월 또는 분기별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여 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가정순회 학급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은 '식품비' 단가 지원
- 시설 및 병원학교(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건강 장애학생은 '위탁학생의 급식비 처리기준' 적용

2) 보장시설수급자 학생 급식비 처리

- 보장시설수급자(재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학생의 급식비 지원(위탁급식 단가 내 실비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지급대상: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
- 지급기준: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함(보장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3)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에 등교하는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대상자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 ※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대상자의 경우: ‘(소속학교)식품비’ 단가 지원
 - ※ 연하곤란, 경구 섭취 불능 등 일반급식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의사 처방 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속학교)식품비’ 단가 지원 가능
- 완제품 사용 승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 처방식·유동식 등 완제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여 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식품비’ 단가 지원)

자. 급식실 현대화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영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의견 조사 등으로 급식 운영 방식 결정
- 위탁급식 지원단가 유 6,610원, 초 6,880원, 중·고 7,150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위탁급식비 내에서 계약 진행 후 위탁급식 계약 잔액 발생 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잔액에 대해 급식비(식품비) 집행 가능

2. 학교급식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가. 학교급식비 부담원칙(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준수

구 분		부 담 주 체
급식시설·설비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식품비		보호자 부담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종사자의 인건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소모품등의 경비, 연료비	보호자 부담가능(보호자 부담경감 노력)

-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기구)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모품비 등의 경비, 연료비의 집행을 원칙으로 함
 - ※ 공립단설유·초·중·고의 경우 2022년부터 학교급식경비 내 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분리(예산 별도 편성) 지원 (사립유지원은 총액 단가 지원)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 급식 배관 등에 연결되어 조리실에 설치하는 밥솥, 국솥, 가스ટે이블, 조명, 환기장치 등의 설비·기구 등을 비롯하여 매뉴얼(취급 설명서)등을 갖춘 냉장고, 야채절단기와 같은 기계 등의 급식시설·설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소모품비 등의 경비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비용
 - ※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되, 가급적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 ※ 물품의 분류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 참고
- 연료비 :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연료비
- 학교급식비 집행 시 급식운영비로 다음 사항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집행)
 - 급식실 방역비
 -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보일러 청관계 등)
 -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및 정기검사비
 - 정수기 유지 관리비(급식실 및 식당 내)
 - 소모품비 외의 급식 경비 : 전화요금, 조리종사자 연수 및 협의회비, 사무용품비, 조달수수료 등
- 자치단체(도청, 시·군청)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경비는 식품비로 전액 집행
- 학교급식비는 전액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 보호자에게 추가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부족분에 대하여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부담)
- 영양교사·영양사와 지출 담당자는 협업하여 급식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회계연도말 급식예산이 과도하게 남거나 부족해지는 사례 사전 방지
- 목적 외 사용,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 미준수, 그 밖의 부당한 집행을 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 중단 및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음

나. 2026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초등학교	1인당 학교급식경비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단가 적용
	차량경비 (교당)	계약	학교별 실제 계약 금액
		전용	5,700,000원
	시설개선비		현대화사업 및 식당증축,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급식확대비		신설교 급식기구비, 조리실 미설치교의 급식시설설치비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학교급식경비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단가 적용
	시설개선비		현대화사업 및 식당증축,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급식확대비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조리실 미설치교의 급식시설설치비
특수학교	1인당 학교급식경비		2026학년도 특수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

※ 차량경비 : 지역별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3.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 지원 근거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나. 2026학년도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영양사	▶ 영양교사 미배치된 직영 및 부분위탁 급식학교에 1명 지원
조리사	▶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급식인원수별 인건비 지원
조리실무사	
비조리교 배식보조원	▶ 비조리교에 배치된 배식보조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 본 지원기준은 학기중 중식을 위한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자 기준(단, 비조리교 배식보조원의 경우 1주 근로시간 15시간 기준)

※ 위탁급식학교 지원 제외

※ 비조리교 배식보조원의 경우 급식차량으로 급식운반되는 비조리교에 한함(조리교가 동일 울타리 내 또는 울타리로 인접해 있는 경우 제외)

※ 2026년 급식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계획 및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참고

- 지원 기준
 -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실무)사, 배식보조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기본급 및 직무관련수당)은 일할계산 하여 지급함
 - 4대 보험료는 2026년 표준보수월액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6학년도 인건비 지원단가는 「2026년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계획」 참고
- 대체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자율형사립고, 부분위탁교 제외)
 - 지원 범위 : 급식교육공무직원의 휴가(유급병가 등)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대체인력 채용 건에 한하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
 - * 근로자별 대체인력 채용 계약 기간 3일 이상인 경우를 뜻함
 - ※ 3일 미만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학교 자체 예산 편성 권장
 - 지원 기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가 필요금액(4대 보험, 월단위 연차휴가 등)은 예산편성 범위 내 지원
 - *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시간당 12,860원(102,880원/일)
 - ※ 처우개선수당은 노사협력과에서 별도 지원
- 신설교, 조리 전환교: 원활한 급식준비를 위해 정기 인사발령 전 (개교)준비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원
 - ※ 교당 지원 금액은 「2026년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계획」 참고
- 현대화사업으로 급식 중단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휴업수당 지급

다. 조리종사자 근무유형

- 조리종사자는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직종임. 단, 방학 중 청소일(연간 8일을 초과할 수 없음)과 법정 의무교육 수강일(여름·겨울 방학 각 1일)은 근무일로 함.
- 2025년 단체협약 체결·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휴가 변경 사항 반영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8156(2025.11.4.)호 참조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10191(2025.12.31.)호 참조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급식

chapter

VII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VII.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급식시스템 개선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

현황

- 학교급식은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
 - 학교 예산의 60%이상이 급식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 과다
- 학교급식 관련 현안(위생·안전사고, 불량 식재료 납품, 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응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 역량강화 필요

추진방향

1.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지원 체제구축

- 가. 학교급식 위생 및 경영관리지원기구 운영방안 강구
 - 학교급식 현장에 필요한 급식운영 자료, 식단 및 레시피, 식중독 예방 관리자료, 학생 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 관련 자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지원 강화
- 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학교급식 정보 제공
 -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전문정보를 제공

2. 학교급식 담당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 가.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급식 전문인력 확보
 -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 급식 현안 대응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보강방안 강구

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전담직원 배치

- 공동구매 활성화, 불공정행위 및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 등 식재료 구매·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체계 마련 필요
- 급식업무 담당부서에 계약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원조정 및 인사에 반영 추진(2013년 감사원 지적사항)

3. 학교급식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지원

가. 학교급식의 식재료의 안전관리, 학생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및 식생활 지도 등의 중요성 부각으로 영양교사·영양사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업무처리 간소화 및 영양교사·영양사 전담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행정지원 방안 강구
- 기숙사 운영 등으로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업무간소화 등 행정지원 방안 강구 및 적정인원 배치와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급식실 내의 정수기 청소만 급식실 소관으로 관리(2025년도 단체협약 제116조)

나.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학교(기관)의 근로자를 전보·교류하여 고용안정 도모
- 교육공무직원 배치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할 경우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고려
- 시간제 근로자 채용은 지양. 단, 비조리교의 급식(배식)보조원 운영 시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채용, 조리실무사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 시간제 단가를 적용
-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대상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교별 조리사·조리실무사의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
- 기타 사항은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름

다.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경우 검수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며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16. 국정감사 지적사항)

라.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 ‘동일 근무시간 적용’ 복무 관리

- 학교 근무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 ※ 관련근거 : 복지법무담당관-13587(2013. 12. 24.)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고용안정 계획 알림」,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7조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적용(근로시간 4시간 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으로 급식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 ※ 휴게시간에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 금지
- 석식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는 종업시각 이후부터 가능
 - ※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08:30~17:30라면 학교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8:30~16:30, 연장근로는 17:30부터 가능
- 적용 퇴근시각 이후부터 연장근로 시작 전까지(16:30~17:30) 휴게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하나, 석식운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 미부여시 그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반드시 준수

마. 조리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 방학일, 졸업일, 운동회 시 급식운영은 가급적 하지 않고 위생 교육시간으로 활용
- 조리 작업 효율화 및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
 - * (예시) 오븐기, 야채절단기, 애벌세척기, HACCP자동화시스템, 살균수제조장치, 보온보냉 배식대, 자동교반기, 자동컵살균세척기, 행주 삶는 기계, 조리 로봇, 잔반리프트 등
- 급식소 내 영양연구실(급식관리실) 청소 지시 금지
- 천장, 후드 등 위험한 시설의 대청소 시 산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하며, 학교 현장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로 확대 추진
 -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학교급식 컨설팅 운영 및 위생·안전 지도 점검 시 조리작업 효율화 내용 포함
-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 급식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처리 식재료 사용으로 작업능률 향상 도모('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바. 학교급식 인력 근무여건 개선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질병 및 감염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
- 학교단위 ‘대체인력풀’ 정보 공유 창구 마련 및 지역 기관(여성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등) 연계를 통한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 등으로 대체인력제도 활성화 추진(‘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휴가 사용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도록 운영 지도
 - ※ 병가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가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대체할 인원이 없어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
-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급식시설 개선 시 학교별 조리인력 현황(인원, 성별)을 고려하여 휴게실 분리, 적정면적 확보, 샤워시설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급식실 근무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 9호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급식비 면제 여부 결정 가능
- 급식실 위생점검 및 급식 운영시 물때·얼룩 지적 및 광내기 등 과도한 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학교 전체 대청소를 진행하는 경우(연 1회 이상) 식당 바닥을 포함하여 진행
 -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급식 구분	급 별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단위:명)													
			50명 이하	51 ~ 100	101 ~ 270	271 ~ 440	441 ~ 620	621 ~ 800	801 ~ 1,000	1,001 ~ 1,200	1,201 ~ 1,400	1,401 ~ 1,550	1,551 ~ 1,700	1,701 ~ 1,850	1,851 ~ 2,000	2,001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배치 기준	중식	초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급식인원 150명 초과 시 마다 1인 을 추가
		중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14인	
		고	1인	2인	3인	4인	5~6인	7~8인	9인	10인	11~12인	13인	14인	15인	16인	
	※ 교육공무직원(조리사) 및 일반직 조리사 포함															

※ 배치기준의 급식인원은 급식 학생수, 교직원, 유치원 등 포함된 인원수임

※ 본 배치기준은 중식 운영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급별 급식인원에 따라 조리종사자 정원관리하며,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 석식운영 초과근무 인원수 : 석식 급식인원에 따라 중식의 배치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며, 그 이상 운영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
- ※ 물결구간 배치기준은 해당구간 급식인원 중간을 기준으로 인원 산정
- ※ 통합학교의 경우 높은 학교급을 적용 (2023.3.7.~)
- ※ 급식인원 1,551명 이상이면서 병행배식, 교실배식, 30회전 이상 식당배식 실시 학교 1인 추가 배치
 - * 3.0회전 이상 식당배식: (급식인원수/식당좌석수) $\geq$ 3.0

나.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준수

5. 학교급식 운영개선

가.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지적 사항 개선

- 학부모 배식 도우미 동원 및 강제적 우유 급식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 모색
- 내용연수 경과 된 학교급식 **차량의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연장 운행 방안 모색(정기 검사 등을 통해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경우 차량구입 지양)
- 학교급식에 플라스틱, 알루미늄 제품 사용 지양(스테인레스 제품 사용)
- 학교급식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상으로 외부인에게 식사제공 지양
- 학생 비급식일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급식 운영 금지(급식시설 및 조리 인력은 학생 급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
-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배식대/식당** 별도 운영 지양
 - ※ 학교·급식여건(학생수 규모, 조리인력, 배식형태, 교사 수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지 않은 교직원 배식대/식당 별도 운영 등은 제한 노력(국회 지적사항)
- 학교급식 운영시 교직원 대상 별도 편의 제공 지양(식단, 기구 등)
- 위생복 및 장화는 년 2회 이상 지급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7조, 제118조

나. ‘학교급식연구회’,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조직·운영 및 행·재정 지원확대

☞ 직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영양사 포함하여 운영

다. 기타 사항 : 급식관련 법령사항 개정 시 학교급식에 즉시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철저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VIII

2026년도 사업별 보고사항

VIII. 2026년 사업별 보고사항

번호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대 상
1	급식학교 명단	2026. 3. 17. /개교즉시	서식 1-1,2,3,4	교육지원청
2	위탁급식학교 명단 및 현황	2026. 6. 30. /2026. 12. 30.	서식 2-1,2	교육지원청
3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2027. 3. 5.	서식 3-1,2	교육지원청
4	학교급식경비 실적보고	2027. 3. 19.	서식 4-1,2	교육지원청
5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참여 현황	2026. 4. 2.	서식 5	교육지원청
6	학교급식 감시원 명단	2026. 2. 27.	서식 6	교육지원청
7	급식학교 위생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	2026. 7. 31./2026. 12. 31.	서식 7-1,2	교육지원청
8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서	발생 즉시	서식 8	전체
9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	발생 후 1개월 이내	서식 9	전체
10	2026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2027. 3. 4.	서식 10-1,2	교육지원청
11	학교급식 실시현황 NEIS 보고	2027. 3. 4.	서식 11	교육지원청
12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	2026. 4. 10.	서식 12-1,2,3,4,5	교육지원청
13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 현황	2026. 5. 22.	서식 13-1,2	교육지원청
14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급식 신청	2026. 12. 10.	서식 14-1,2	교육지원청
15	천정, 후드등 위험시설 대청소 위탁현황	2026. 10. 30.	서식 15-1,2	교육지원청
16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2026. 4. 2.	서식 16	교육지원청
17	학생주도 학교 급식 활동,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교육 현황	2026. 9. 4.	서식 17	교육지원청
18	신설학교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시설 추진사항 보고	2026. 6. 26./2026. 12. 30.	서식 18	교육지원청
19	학교급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6. 10. 8.	서식 19	교육지원청
20	학교급식 기구 현황	2026. 3. 27.	서식 20	교육지원청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 전국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7개 시도별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 전국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7개 시도별

1. 자서대사 · 조 조 서시 조 의타그시 은여교(현대화 공사 이력·의타 득으로 의타그시을 시시하는 하교도 표하)

[서식3-1]

2026년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초, 중)

교육청명	지역명	급별	학교명	설립 종류 (초,중,고,특 수학교)	운영 방식	조리 방식	공동조리교		배식 방법	자율배 식여부	자율배 식학교 명칭	급식인원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해당란에 "1" 기재)-중복 가능				음식물 쓰레기 업체 위탁한 경우란 작성							무상 처리 "1" 기 재	종량제비용 (단위: 원) (3월~27년2 월말)	급식 운영 특이사항 (단위: 원, 현대화, 계약 변경, 분 량량 및 처리 비용 증감사유 등)	비고																																																																																																																																																																																																																																																																																																																																																																																																																																																																																																																																																																																																																																																																																																																																																																																																																																																																																																																																																																																																																																																																																																																																																																																																																																																																																																																																																																																																																																																	
							비조리교명	처리방법				유치원	학생	교직원	총 합계	구분 (발생기간)	급식인원수 (단위:명)	발생량(단위:kg)				업체 입찰	음식물처리기		종량제 봉투사 용	푸드 뱅크	기타 (방법 기재)	업체명	계약방법(해당기준)																																																																																																																																																																																																																																																																																																																																																																																																																																																																																																																																																																																																																																																																																																																																																																																																																																																																																																																																																																																																																																																																																																																																																																																																																																																																																																																																																																																																																																																						
																		처리기 사용	부산물 처리방법	당역세 여부 "1"기재	처리기간 (단위:개 월)		처리단가 (단위:원/개 월)	종량제 비용 "1"기재					단가 (단위: 원)	단가 (단위: 원)																																																																																																																																																																																																																																																																																																																																																																																																																																																																																																																																																																																																																																																																																																																																																																																																																																																																																																																																																																																																																																																																																																																																																																																																																																																																																																																																																																																																																																																					
유초	유중	초	중	고	고	고																																																																																																																																																																																																																																																																																																																																																																																																																																																																																																																																																																																																																																																																																																																																																																																																																																																																																																																																																																																																																																																																																																																																																																																																																																																																																																																																																																																																																																																																													

1. 전체 셀 병합 금지!!

2. 제출대상 : 초,중 전체학교(비조리교도 별도 작성 제출)

※ 단, 공동조리교에서 일괄 처리시 발생량 및 처리비용 등은 공동조리교에서, 급식인원수는 비조리교에서 작성

3. 운영방식 : 직영, 부분위탁, 위탁, 운반

4. 조리방식 : 단독, 공동, 비조리

5. 공동조리교 : 공동조리교의 경우 비조리교명 작성, 비조리교 포함하여 일괄처리 시 “일괄처리“, 각각 처리 시 “단독처리“ 작성

6. 배식방법 : 식당, 교실, 병행

7. 자율배식 여부 : 자율, 부분자율

※ 밥, 국, 반찬 등 모든 식단을 스스로 배식할 경우 자율, 밥, 반찬 등 부분 자율배식할 경우 부분자율, 자율배식 아닐경우 빈칸

8. 급식인원수 : 유치원, 학생, 교직원 등 모두 포함(4월1일 기준으로 작성)

9.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순수 잔반발생량 측정하고자 함)

- 전처리 :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예: 감자,당근,양파 등의 껍질, 국물용 무, 멸치, 다시마, 과일껍질(특히 수박) 등)

- 순수 잔반 : 급식 배식 후 남은 음식 및 음식물쓰레기

※ 일반쓰레기(급식 배식 후 동물의 뼈, 어패류 껍질 등 일반쓰레기 봉투로 처리하는 쓰레기) 제외

10.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위탁업체, 음식물 처리기 사용, 종량제봉투사용, 푸드뱅크, 기타처리(직접기재) 중에서 선택(처리기 사용교는 부산물 처리방법 같이 기재)

11. 계약방법 : 업체에 위탁한 경우만 작성

- 정액제 : 음식물 쓰레기량에 관계없이 월, 연 등의 단위로 정액제 처리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단가 작성(예: 10개월에 200만원일 경우, 처리단가 : 20만원, 총처리비용 : 200만원)

- 종량제 : 음식물 쓰레기량에 비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할 경우 단위, 단가 작성(예: Kg당 200원 작성)

※ 계약방법은 현재기준으로 작성하며 중간에 계약방법, 업체 및 단가 변경 등으로 비용이 변경됐을 시 특이사항란에 작성(예: 3월 업체변경으로 단가변경, 5월 단가변경, 7월 계약방법 변경)

※ 정액제 실시하나 일정량 초과 시 종량제로 할 경우 정액제로 표기하고 비교란에 작성(예 : 월 500kg 이하 70,000원, 초과 시 kg 당 100원)

12. 처리비용(단위:원): 해당기간 총처리비용 기재 (무상인 경우 “무상“ 해당란에 “1“로 기재)

- 무상처리: ex) 가축사료(돼지농장 제공 불가), BTL학교로 관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 등 “1“로 기재

13. 기간: 26년 3월~ 27년 2월까지 총 발생량 및 처리비용 작성(한줄로 작성)

* 잔반량(kg) 작성시, 잔반량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보고 되지않도록(과다 잔반량 발생 등) 신중히 작성

14. 급식운영 특이사항: 신설, 현대화, 계약 변경, 음식물쓰레기 및 처리비용 증감사유 등

[서식3-2]

2026년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고, 특수)

[illegible]

1. 전체 셀 병합 금지!!
2. 제출대상 : 고,특수 전체학교(비조리교도 별도 작성 제출)
※ 단, 공동조리교에서 일괄 처리시 발생량 및 처리비용 등은 공동조리교에서, 급식인원수는 비조리교에서 작성
3. 운영방식 : 직영, 부분위탁, 위탁, 운반
4. 조리방식 : 단독, 공동, 비조리
5. 공동조리교 : 공동조리교의 경우 비조리교명 작성, 비조리교 포함하여 일괄처리 시 “일괄처리“, 각각 처리 시 “단독처리“ 작성
6. 배식방법 : 식당, 교실, 병행
7. 자율배식 여부 : 자율, 부분자율
※ 밥, 국, 반찬 등 모든 식단을 스스로 배식할 경우 자율, 밥, 반찬 등 부분 자율배식할 경우 부분자율, 자율배식 아닐경우 빈칸
8. 급식인원수 : 유치원, 학생, 교직원 등 모두 포함(4월1일 기준으로 작성)
9.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순수 잔반발생량 측정하고자 함)
 - 전처리 :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예: 감자,당근,양파 등의 껍질, 국물용 무, 멸치, 다시마, 과일껍질(특히 수박) 등)
 - 순수 잔반 : 급식 배식 후 남은 음식 및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급식 배식 후 동물의 뼈, 어패류 껍질 등 일반쓰레기 봉투로 처리하는 쓰레기) 제외
10.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위탁업체, 음식물 처리기 사용, 종량제봉투사용, 푸드뱅크, 기타처리(직접기재) 중에서 선택(처리기 사용교는 부산물 처리방법 같이 기재)
11. 계약방법 : 업체에 위탁한 경우만 작성
 - 정액제 : 음식물 쓰레기량에 관계없이 월, 연 등의 단위로 정액제 처리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단가 작성(예: 10개월에 200만원일 경우, 처리단가 : 20만원, 총처리비용 : 200만원)
 - 종량제 : 음식물 쓰레기량에 비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할 경우 단위, 단가 작성(예: Kg당 200원 작성)※ 계약방법은 현재기준으로 작성하며 중간에 계약방법, 업체 및 단가 변경 등으로 비용이 변경됐을 시 특이사항란에 작성(예: 3월 업체변경으로 단가변경, 5월 단가변경, 7월 계약방법 변경)
- ※ 정액제 실시하나 일정량 초과 시 종량제로 할 경우 정액제로 표기하고 비교란에 작성(예 : 월 500kg 이하 70,000원, 초과 시 kg 당 100원)
12. 처리비용(단위:원) : 해당기간 총처리비용 기재 (무상인 경우 “무상“ 해당란에 “1“로 기재)
13. 기간: 26년 3월~ 27년 2월까지 총 발생량 및 처리비용 작성(한줄로 작성)
- * 잔반량(kg) 작성시, 잔반량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보고 되지않도록(과다 잔반량 발생 등) 신중히 작성
14. 급식운영 특이사항: 신설, 현대화, 계약 변경, 음식물쓰레기 및 처리비용 증감사유 등

[서식4-1]

2026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실적 보고(총괄)

2026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실적 보고(총괄)

※ 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여 작성
기관명 :○○교육지원청

시,군명	급별	학교수	학생수	지원일수 (평균일수)	교부액(단위:원)			집행액(단위:원)													
					교육 (교육청+도청)	시군청	소계	교육청				도청 식품비 (식품비 20.4%)	시군청				합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안양시	총계	-	-	-	-	-	-	-	-	-	-	-	-	-	-	-	-	-	-	-	-
	유 공립						-	-	-	-	-	-				-				-	-
	유 사립						-	-	-	-	-	-				-				-	-
	초						-	-	-	-	-	-				-				-	-
	중						-	-	-	-	-	-				-				-	-
	고						-	-	-	-	-	-				-				-	-
	특수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작성기준일 : 2026. 3. 1.~2027. 2. 28.
- ※ 지원일수 : 초등학교 190일, 중·고등학교 185일, 특수 190일
- ※ 지자체(도청,시군청) 지원금은 식품비 우선 집행

[서식5]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참여 현황

2. 지원 계획																																																																																																																																																																																																																																																																																																																																																																																																																																																																																																																																																																																																																																																																																																																																																																																																																																																																																																																																																																																																																																																																																																																																																																																																																																																																																																																																																																																																																																										
비고명	사업 부원 기재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율 예산율	1) 지원학교수(교)(A)										2) 지원학생수(명)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3) 지원예산(천원)					4) 지원품목/학교수(B)					비고																																																																																																																																																																																																																																																																																																																																																																																																																																																																																																																																																																																																																																																																																																																																																																																																																																																																																																																																																																																																																																																																																																																																																																																																																																																																																																																																																																																																												
					유		초		중		고		특수		합		유	초	중	고	특수	합	합계	유	초	중	고	합계	합계		유	초	중	고	합계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지원학교 수	비교학교 포함 학교 수																																																																																																																																																																																																																																																																																																																																																																																																																																																																																																																																																																																																																																																																																																																																																																																																																																																																																																																																																																																																																																																																																																																																																																																																																																																																																																																																																																																																					

□ 비고란에 자치단체별 지원내용을 기재, 엑셀작성 제출

※ 보고기일 : 2026. 4. 2.

- 작성기준 : 2026년 3월 기준

- 교육지원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취합 확인 보고

1) 지원학교수(교): 2026년 3월 실제 지원사업 참여 학교 수

2) 지원학생수(명): 2026. 3. 31. 기준

3) 지원방법: 보조금이 학교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우수식재료가 공급 되는 경우, 즉 보조금은 시군에서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지원방법을 “현물”로 기재

-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농산물과 쌀지원을 구분하여 기재

- 지역단위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도비50%,시군비50%) 제외한 시군자체 지원만 기재/ 지원품목(또는 사업별)로 칸을 구분하여 작성

※ 시군(시군 급식지원센터)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별첨]하여 제출

- 기타 : 우유지원 미포함

- 지원학교수(교)(A) = 지원방법(학교수)(B)

[서식6]

학교급식 감시원 명단

교육지원청명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사진	비고

※ 사진첨부(3cm × 4cm), 학교급식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학교급식감시원증’ 발급용

※ 신규발급대상자 및 변경대상자에 한하여 보고

[서식7-1]

급식학교 위생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상반기)

(상반기 보고 서식)

1. 점검 결과 개요

• 점검기간 : 25-03-01 ~ 25-03-05

• 점검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립학교, 영유아보육시설, 학교급식,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교육청명	구분	유형	점검대상	점검대상명 (학교명)	점검 일시	점검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비고
						교육청 점검					지역교육청					시설		주요		영양		위생		
						학교급식 (학교급식)	위생	영양	위생	영양	학교급식	위생	영양	위생	영양	학교급식	위생	영양	위생	영양				
	초	초																						
		중																						
		고																						
		특수																						
		합계																						

2. 학교별 점검 결과

교육청명	시군명	유형	학교명	점검명	점검 일자	위생점검 결과					영양점검 결과 (영양)					점검(현장) (안전점검)					점검결과					비고
						점검일자	점검결과	학교급식법 위생사항	영양사법 위생사항	위생사항 개선사항	점검 일자	점검결과	영양사법 위생사항	영양사법 개선사항	점검 일자	점검결과	영양사법 위생사항	영양사법 개선사항	점검 일자	점검결과	영양사법 위생사항	영양사법 개선사항				
																							점검일자	점검결과	학교급식법 위생사항	
전북도교육청	전주	초	00초	영양	2025-03-01	A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위생사항	영양사항	비고					

3. 점검(현장) 인력현황

• 점검일자: 2025년 3월 1일 (월) ~ 2025년 3월 5일 (금)

• 점검결과: 위생사항: A, 영양사항: B, 위생사항: C, 영양사항: D

4. 특별점검 현황

• 점검일자: 2025년 3월 1일 (월) ~ 2025년 3월 5일 (금)

[서식7-2]

급식학교 위생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하반기)

[illegible]

[서식 8]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26.03.16. ○○○○교육청)

<요약>

'26.3.16(월), ○○○도 ○○○시 △△초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규모		영양교사/영양사
			학생수	교직원수	
△△초등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500	45	김○○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3.16.(월) 10: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3.16.(월) 11: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 (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00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김길동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사례 정의:
- 학생 환자 현황('26.3.16. 17시 기준)

구분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수							
환자수							

※ 교직원:

- 일일상황보고(작성예시)

구분	환자수(명)		치료중 환자수(명)				비고
	누적	신규	입원	통원	투약/자가	합계	
03월 16일	11(1)	11(1)	1	5	5(1)	11(1)	발생인지일
03월 17일	13(1)	2	0	3	2	5	
03월 18일	13(1)	0	0	1	1	2	추가환자 없음

※ 매일 17시 기준으로 환자 및 치료 현황을 엑셀로 작성(별도서식 제공)하여 교육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 / 2일 연속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면 보고 종료 / (): 교직원

5. 참고사항

- 제공식단
-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품목별	납품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계약기간	비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가금류					
김치	유통:				
	제조:				

- 언론취재 :
- 기타 :

[서식 9]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서식10-1]

202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초,중,고,특수학교)

[illegible]

□ 작성요령

◎작성대상: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인가대안학교

※ 제출일 2027. 3. 4.까지

◎ 학교급식 일반현황

- 1) 급별 : 공립 단설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인가대안학교
- 2) 설립별 : 공립, 사립, 국립
- 3) 지역유형 : 행정구역상 “도시“, “농촌“, “벽지“(예 : 읍, 면 단위 “농촌“형, ○○시 ○○동 “도시“형)
- 4) 운영방식 : “직영“, “위탁“, “부분위탁“(인력만 위탁인 경우 → 부분위탁)
- 5) 조리방식 : “단독“, “공동“, “비조리“, “도시락운반“
- 6)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 **2026. 4. 1. 기준으로 작성**(급식인원수는 중식 기준으로 작성)
- 7) 급식단가 : 유치원, 학생, 교직원 구분하여 기재(우수축산물, 우수농산물, 친환경 쌀지원 등 차액지원 단가 제외)

※ 교명 변경 등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

◎ 학교급식 수입·지출내역

- 예산 작성기준 : 수익자부담금 2026.3.1.~2027.2.28, 교육비특별회계 2026.3.1.~2027.2.28, 반드시 교육청 및 외부에서 지원된 저소득층 급식비(방학중 급식 지원 제외)를 포함하여 작성
- 구분 : 교특(교육청지원액), 학교(유치원)자체(학교운영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발전기금 등)
- 수입총계(A) = 지출총계(B)
- 참고사항 : 조식, 중식, 석식 포함 / 무상급식비 교특과 지자체 구분 시 지원 비율로 계상 / 교직원급식비는 수익자부담금란에 기재 / 국립학교는 국고를 “교특”란에 기재 / 비조리교는 해당교 지출 금액만 기재(세척원인건비, 운영비, 차량경비 등) / 조리교는 비조리교 전입금 포함 작성 / 도시락운반의 경우 전액 식품비란에 기재

8. 학교급식 수입내역

- 공동조리교의 경우 비조리교에서 송금받은 예산 포함하여 작성
- 비조리교의 경우 조리교에 송금한 내역 미작성, 직접 지출한 내역에 대한 수입내역만 작성
- 교육청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영양교사, 일반직 조리사),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인건비)를 입력
- 기타 작성 시 주요 재원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전년도 이월금(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이월)은 재원별 포함 작성

9. 학교급식 지출내역 공통사항

- 공동조리교의 경우 비조리교에서 송금받아 지출한 예산 포함하여 작성
- 비조리교의 경우 조리교로 송금한 내역 미작성, 직접 지출한 내역만 작성
- ① 시설, 설비비 : 수익자부담금(무상급식비) 지출 불가 항목
 - 교특 : 교육청 급식팀에서 지원한 경우 급식팀에 기재, 교육청 급식팀 이외에 타과에서 지원한 경우 “기타팀”에 기재
 - ※ 2026학년도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원한 경우, 포함하여 보고
- ② 식품비
 - 시보조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 친환경 쌀 지원금 등 차액지원금 제외
 - 희망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식품비에서 우유값 제외
 - 자치단체지원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는 가급적 식품 비로 전액 집행
- ③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일반직 조리사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재(기간제 영양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포함)
 - ※ 재원별 구분 기재
- ④ 운영비
 - 시설 및 설비의 유지비 : 급식용승강기의 유지보수비나 식기세척기 및 냉장고의 부품수리비, 압력용기 안전밸브 교체비용 등과 같이 급식시설 및 설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관련 경비(급식차량경비 포함하여 작성 요함)
 - ※ 학교급식법 8조에 의거 급식 시설, 설비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무상급식비)에서 사용 불가함 유념
 - 연료비, 소모품비, 기타 :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연료비/ ‘급식시설·설비·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기물류 구입비/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경비

[서식10-2]

202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지원청)

1. 급식학교 및 학교현황(통계), [단위 : 교,명,천원]

구분	전체	급식실시										작업										부분위탁										위탁										외부 문헌																																																																																																																																																																																																																																																																																																																																																																																																																																																																																																																																																																																																																																																																																																																																																																																																																																																																																																																																																																																																																																																																																																																																																																																																																																																																																																																																																																																					
		종계		소계(단독+공동조리+부분)								단독		공동조리								단독		공동조리								단독		교내위탁																																																																																																																																																																																																																																																																																																																																																																																																																																																																																																																																																																																																																																																																																																																																																																																																																																																																																																																																																																																																																																																																																																																																																																																																																																																																																																																																																																																													
				직업		부분위탁		위탁						공동		비조리		공동관리		공동관리(대상)				공동		비조리		공동관리						공동관리(대상)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급식	초	초																																																																																																																																																																																																																																																																																																																																																																																																																																																																																																																																																																																																																																																																																																																																																																																																																																																																																																																																																																																																																																																																																																																																																																																																																																																																																																																																																																																																																													

2. 개교 및 통폐합 현황

1) 2026년 개교 : 초 2교, 중 1교, 고 1교, 특수 1교

① 초(2교) : ○○초(수원), △△초(수원)

② 중(1교) : ○○중(수원)

③ 고(1교) : ○○고(수원)

④ 특수(1교) : ○○학교(수원)

2) 통폐합 : ○○중(수원), △△중(수원), □□중(수원), 3개교를 통폐합해서 ◎◎중(수원) 개교

3. 2026년 학교현황 변동사항

※ 작성 예) 아래 참조

1) 공동조리에서 단독조리로 변경(초 1교) : ○○초(수원)

2) 농촌에서 도시로 변경(중 1교) : 남양중(수원)

3) 위탁에서 부분위탁으로 변경(고 2교) : ○○고(수원), △△고(수원)

※ 제출일 : 2027. 3. 4.까지, 교육지원청

[서식 11]

학교급식 실시현황 NEIS 보고

1. 보고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거 보고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급식관리	기준 및 대상	급식외관리	보고시기	학교급식통계	보고시기
학교기본정보등록 -기본정보등록 -급식현황카드등록 -급식인원등록	기준: 4.1 대상: 전체	집행액관리 -급식연간집행액 등록	'26. 2. 27.	학교마감현황관리 -학교의 보고자료 마감관리와 동일	학교보고 자료 검토후 10일 이내
급식인력관리 -급식인력현황등록	기준: 4.1 대상: 전체	보고자료 마감관리 -급식학교 및 학생수현황	'26. 4. 15.	보고자료 제출처리	'26. 4. 22. '26. 3. 3.
학교급식개시/ 변경보고서 작성 -학교급식개시보고서 -학교급식변경보고서	기준: 4.1 신설학교 기존학교	-급식인력 현황 -급식예산연간집행액현황 -학교급식개시보고서 -학교급식변경보고서	'26. 4. 15. '26. 2. 27. '26. 4. 15. '26. 4. 15. / 변경 후		

3. 작성시 유의사항

- 각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기본정보등록의 각항목별 변경사항 및 급식인력현황을 4월 1일 기준으로 수정 등록, 수정 후 변경사항은 변경후 10일 이내에 수정 등록
- 학교급식개시보고서(신설학교) : 급식개시후 10일 이내
- 학교급식변경보고서(기존학교) : 기존학교는 매년 급식단가 등이 변동되므로 매년 보고자료 마감처리, 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은 변경후 10일 이내 보고
- ※ 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 중 설치현황에서 설치시 재원부담과 금액은 전년도 지원액만 기재하고, 설치후 변경내역에는 전년도 지원내역을 기재

[서식12-1]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초등학교)

① 교육지원청	② 학교급	③ 학교명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배치1, 미배치0)	⑥ 학급수 (2026.4.1. 기준)	⑦ 학생수 (2026.4.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 여부 (반영1, 미반영0)	⑨ 학년 연간교육시수	⑩ 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편성운영 해당란에 '1'표기)					⑪ 교육 주제 (주제 참고하여 해당란에 '1'표기)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방과후활동 등)	미실시	1	2	3	4	5	6	7	8	9	10
수원	초	경기초			5	150	1	1	2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5	150	1	2	2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6	180	1	3	6		1	1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7	210	1	4	6			1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6	180	1	5	2	1		1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6	180	1	6	2			1	1								1		1
수원	초	경기초	1	1	35	1,050	1	2~6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 제출대상:초등학교
- 작성자:영양교사(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담당교사)

- 제출기일 : 2026. 4. 3.

- 작성방법

※ 가정통신문 등 일회성 교육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별 수업시간(초등 40, 중등 45분, 고등 50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② 급별 : 초

③ 학교명 : 00초(등학교 생략)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유무: 영양교사 배치 1(기간제 포함), 미배치 0(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교는 미배치로 0으로 표기)

⑥ 학급수 : 2026. 4. 1. 기준

⑦ 학생수 : 2026. 4. 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계획)에 반영여부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은 1, 미반영은 0으로 표기

⑨ 학년별 연간교육시수 : 2차시, 8차시 등,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연 2차시 이상 교육활동은 의무 사항임, 합계 셀에는 최소시수~최대시수표시)

- ⑪ 영양·식생활교육 실시방법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된 방법 표시(중복표시 가능, 교과 및 창체 이외의 교육(그룹강의 등)은 기타 방과 후 활동에 기재)
- ⑫ 교육주제 : 주제별로 해당되는 란에 '1' 기재, 중복표시 가능
 - 1. 식품과 영양소(영양소, 기초식품군, 식품구성 자전거 등)
 - 2.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건강한 간식, 식품표시, 당·나트륨·지방줄이기 등)
 - 3. 영양과 건강(식생활관련 질병예방 등)
 - 4.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생활 등)
 - 5. 식품안전(카페인, 식품첨가물, 식품알레르기 등)
 - 6. 식품위생(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보관 등)
 - 7. 생태·환경(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철음식, 지역농산물, 저탄소 식생활 등)
 - 8. 학교급식(학교급식의 이해, 급식질서, 급식안전 등)
 - 9. 식문화(전통식문화 계승 발전, 외국 음식문화 등)
 - 10. 기타(요리활동 등)

[서식12-2]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중학교)

① 교육 지원청	②학교급	③학교명	④학교설 립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영양교 사배치 (배치1, 미배치0)	⑥학급수 (2026.4.1. 기준)	⑦학생수 (2026.4.1. 기준)	⑧영양·식생 활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여부 (반영1, 미반영0)	⑨학년	⑩학년별 연간교육시 수	⑪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편성운영 해당란에 '1'표기)					⑫교육 주제 (주제 참고하여 해당란에 '1'표기)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 동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방과후활 동 등)	미실시	1	2	3	4	5	6	7	8	9	10
수원	중	결기중			5	150	1	1	2	1		1				1		1						
수원	중	결기중			5	150	1	2	2		1	1				1			1					
수원	중	결기중			6	180	1	3	6		1	1			1		1		1		1			
수원	중	결기중	1	1	16	480	1		2~6	1	1	1	0	0	1	1	1	1	1	1	1	0	0	1

- 셀병합금지

- 제출대상:중학교

- 작성자:영양교사(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담당교사)

- 제출기일 : 2026. 4. 3.

- 작성방법

※ 가정통신문 등 일회성 교육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별 수업시간(초등 40, 중등 45분, 고등 50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② 학교급 : 중

③ 학교명 : 00중(학교 생략)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유무: 영양교사 배치 1(기간제 포함), 미배치 0(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교는 미배치로 0으로 표기)

⑥ 학급수 : 2026. 4. 1. 기준

⑦ 학생수 : 2026. 4. 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계획)에 반영여부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은 1, 미반영은 0으로 표기

⑩ 학년별 연간교육시수 : 2차시, 8차시 등,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연 2차시 이상 교육활동은 의무 사항임, 합계 셀에는 최소시수~최대시수표시)

⑪ 영양·식생활교육 실시방법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된 방법 표시(중복표시 가능, 교과 및 창체 이외의 교육(그룹강의 등)은 기타 방과 후 활동에 기재)

- ⑫ 교육주제 : 주제별로 해당되는 란에 '1' 기재, 중복표시 가능
1. 식품과 영양소(영양소, 기초식품군, 식품구성 자전거 등)
 2.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건강한 간식, 식품표시, 당·나트륨·지방줄이기 등)
 3. 영양과 건강(식생활관련 질병예방 등)
 4.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생활 등)
 5. 식품안전(카페인, 식품첨가물, 식품알레르기 등)
 6. 식품위생(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보관 등)
 7. 생태·환경(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철음식, 지역농산물, 저탄소 식생활 등)
 8. 학교급식(학교급식의 이해, 급식질서, 급식안전 등)
 9. 식문화(전통식문화 계승 발전, 외국 음식문화 등)
 10. 기타(요리활동 등)

[서식12-3]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고등학교)

① 교육지원청	② 학교급	③ 학교명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배치1, 미배치0)	⑥ 학급수 (2026.4.1. 기준)	⑦ 학생수 (2026.4.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 여부 (반영1, 미반영0)	⑨ 학년 연간교육시수	⑩ 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편성운영 해당란에 '1'표기)						⑪ 교육 주제 (주제 참고하여 해당란에 '1'표기)										
									관련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방과후활동	미 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수원	고	경기고			5	150	1	1	2	1		1				1		1							
수원	고	경기고			5	150	1	2	2			1	1			1			1						
수원	고	경기고			6	180	1	3	6		1	1			1		1		1		1			1	1
수원	고	경기고	1	1	16	480	1	2~6	1	1	1	1	0	0	1	1	1	1	1	1	1	0	0	1	1

- 제출대상: 고등학교

- 작성자:영양교사(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담당교사)

- 제출기일 : 2026. 4. 3.

- 작성방법

※ 가정통신물 등 일회성 교육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별 수업시간(초등 40, 중등 45분, 고등 50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학교소속 교육지원청

② 급별 : 초, 중, 고, 특수

③ 학교명 : 00고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사립2,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유무: 영양교사 배치 1(기간제 포함), 미배치 0(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교는 미배치로 0으로 표기)

⑥ 학급수 : 2026. 4. 1. 기준

⑦ 학생수 : 2026. 4. 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계획)에 반영여부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은 1, 미반영은 0으로 표기

⑩ 학년별 연간교육시수 : 2차시, 8차시 등,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연 2차시 이상 교육활동은 의무 사항임, 합계 셀에는 최소시수~최대시수표시)

⑪ 영양·식생활교육 실시방법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된 방법 표시(중복표시 가능, 교과 및 창체 이외의 교육(그룹강의 등)은 기타 방과 후 활동에 기재)

⑫ 교육주제 : 주제별로 해당되는 란에 '1' 기재, 중복표시 가능

1. 식품과 영양소(영양소, 기초식품군, 식품구성 자전거 등)
2.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건강한 간식, 식품표시, 당·나트륨·지방줄이기 등)
3. 영양과 건강(식생활관련 질병예방 등)
4.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생활 등)
5. 식품안전(카페인, 식품첨가물, 식품알레르기 등)
6. 식품위생(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보관 등)
7. 생태·환경(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철음식, 지역농산물, 저탄소 식생활 등)
8. 학교급식(학교급식의 이해, 급식질서, 급식안전 등)
9. 식문화(전통식문화 계승 발전, 외국 음식문화 등)
10. 기타(요리활동 등)
11. 선택교과(선택교과로 운영)

[서식12-4]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특수, 통합, 각종학교)

① 교육 지원청	②학교급	③학교명	④학교설립 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영양교 사배치 (배치1, 미배치0)	⑥학급수 (2026.4.1. 기준)	⑦학생수 (2026.4.1. 기준)	⑧영양·식생활 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여부 (반영1, 미반영0)	⑨학년 연간교육시 수	⑩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편성운영 해당란에 '1'표기)						⑪교육 주제 (주제 참고하여 해당란에 '1'표기)										
									관련 교과	선택 교과	창의적 체험활 동	관련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기타 방과후활동	미 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0	1	1	2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5	1	2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2	1	3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6	1	4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2	1	5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4	1	6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56	1	1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52	1	2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48	1	3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0	1	1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2	1	2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4	1	3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60	1	전공과	2			1	1							1	1				
수원	특수	경기특수학교	1	1	7	69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제출대상: 특수,통합,각종학교
- 작성자:영양교사(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담당교사)
- 제출기일 : 2026. 4. 3.

- 작성방법

※ 가정통신물 등 일회성 교육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별 수업시간(초등 40, 중등 45분, 고등 50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학교소속 교육지원청

② 급별 : 초, 중, 고(특수,통합,각종)

③ 학교명 : 00고

④ 학교설립형태: 공립1,사립2,국립3

⑤ 영양교사 배치 유무: 영양교사 배치 1(기간제 포함), 미배치 0(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교는 미배치로 0으로 표기)

⑥ 학급수 : 2026. 4. 1. 기준

⑦ 학생수 : 2026. 4. 1. 기준

⑧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계획)에 반영여부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은 1, 미반영은 0으로 표기

⑩ 학년별 연간교육시수 : 2차시, 8차시 등,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연 2차시 이상 교육활동은 의무 사항임)

⑪ 영양·식생활교육 실시방법 :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된 방법 표시(중복표시 가능, 교과 및 창체 이외의 교육(그룹강의 등)은 기타 방과 후 활동에 기재

⑫ 교육주제 : 주제별로 해당되는 란에 '1' 기재, 중복표시 가능

1. 식품과 영양소(영양소,기초식품군,식품구성 자전거 등)

2.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건강한 간식,식품표시,당·나트륨·지방줄이기 등)

3. 영양과 건강(식생활관련 질병예방 등)

4.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생활 등)

5. 식품안전(카페인,식품첨가물,식품알레르기 등)

6. 식품위생(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보관 등)

7. 생태·환경(음식물쓰레기줄이기,제철음식,지역농산물,저탄소 식생활 등)

8. 학교급식(학교급식의 이해, 급식질서, 급식안전 등)

9. 식문화(전통식문화 계승 발전, 외국 음식문화 등)

10. 기타(요리활동 등)

11. 선택교과(선택교과로 운영)

[서식12-5]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현황(교육지원청)

① 교육 지원청	②학교급	③학교명	④학교설립 형태 (공립1, 사립2 국립3)	⑤영양교 사 배치 (배치1, 미배치0)	⑥학급수 (2026.4.1. 기준)	⑦학생수 (2026.4.1. 기준)	⑧영양·식생활 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여부 (반영1, 미반영0)	⑨학년 연간교육시 수	⑩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편성운영 해당란에 '1'표기)						⑪교육 주제 (주제 참고하여 해당란에 '1'표기)										
									관련 교과	선택 교과	창의적 체험활 동	관련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기타 방과후활동	미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0	1	1	2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5	1	2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2	1	3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6	1	4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2	1	5	2	1			1						1	1					
수원	초	경기특수학교			1	54	1	6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56	1	1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52	1	2	2		1	1								1		1			
수원	중	경기특수학교			1	48	1	3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0	1	1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2	1	2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54	1	3	2		1	1								1		1			
수원	고	경기특수학교			1	60	1	전공과	2		1	1								1	1				
수원	특수	경기특수학교	1	1	7	69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제출대상: 교육지원청

- 제출기일 : 2026. 4. 10.

- 작성방법

※ 가정통신물 등 일회성 교육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별 수업시간(초등 40, 중등 45분, 고등 50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학교소속 교육지원청
- ② 급별 :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 ③ 학교설립형태: 공립, 사립, 국립
- ④ 학교수: 분교포함
- ⑥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 학교수
- ⑦ 영양교사 배치교 실시현황(영양교사 배치학교 수, 영양교사 배치교 중 교육과정 편성학교 수)
- ⑧ 영양·식생활교육 편성운영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 표시(중복표시 가능, 교과 및 창체 이외의 교육(그룹강의 등)은 기타 방과 후 활동에 기재)
- ⑨ 교육주제별 실시 되는 합계
 1. 식품과 영양소(영양소, 기초식품군, 식품구성 자전거 등)
 2.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건강한 간식, 식품표시, 당·나트륨·지방줄이기 등)
 3. 영양과 건강(식생활관련 질병예방 등)
 4. 올바른 식습관(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생활 등)
 5. 식품안전(카페인, 식품첨가물, 식품알레르기 등)
 6. 식품위생(식중독예방,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보관 등)
 7. 생태·환경(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철음식, 지역농산물, 저탄소 식생활 등)
 8. 학교급식(학교급식의 이해, 급식질서, 급식안전 등)
 9. 식문화(전통식문화 계승 발전, 외국 음식문화 등)
 10. 기타(요리활동 등)
 11. 선택교과(선택교과로 운영)

[서식13-1]

식품알레르기 운영현황 조사

① 지역명	② 급별	③ 학교명	④ 공·사 립	⑤ 학급수 (2026.4.1.기준)	⑥ 학생수 (2026.4.1.기준)	⑧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 현황				⑨ 선택식단운영현황(자율) (해당란에 '1'표기)				비고
						⑦ 학생 현황 (명)	⑧ 학생 관리 방법 (해당란에 '1'표기)			즉제공	선택 식단	이벤트 식단	생태 환경 식단	
							⑧-1 식품알레르기 정보제공(필수)	⑧-2 제거식단 제공(자율)	⑧-3 대체식단 제공(자율)					
예)수원	초	00초	공립	26	968	8	8	1			1		1	중복표시가능

- 제출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제출기일 : 2026. 5. 15.

- 작성방법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등

② 급별 : 초, 중, 고, 특수. 각종

③ 학교명 : 00초, 00중, 00고, 00학교

④ 공·사립 : 공립, 사립

⑤ 학급수 : 2026. 4. 1. 기준

⑥ 학생수 : 2026. 4. 1. 기준

⑦ 학생 현황(명)

⑧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 현황: 총인원(명)

⑧-1. 식품알레르기 정보제공(필수)

⑧-2. 제거식단 제공(자율)

⑧-3. 대체식단 제공(자율)

⑨ 선택식단운영 현황(자율) : 운영하는 형태에 1표기, 중복표시 가능

[서식13-2]

식품알레르기 유증상 학생 및 선택식단 운영 현황 통계

① 지역명	② 급별	③ 학교수 (2024.4.1.기준)	③학생수 (2024.4.1.기준)	④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 현황				⑤선택식단운영현황(자율)				비고
				학생 현황 (명)	학생 관리 방법			죽제공	선택식단	이벤트 식단	생태환경 식단	
					식품알레르기 정보제공(필수)	제거식단 제공(자 율)	대체식단 제공 (자율)					
예) 수원	초	100	968	13,560	96	30	0	10	30	57	10	
	중											
	고											
	특수											
	각종											
	계											

※ 셀병합금지: 학교별 백데이터 함께 제출

- 제출대상 : 교육지원청
- 제출기일 : 2026. 5. 22.
- 작성방법
 - ① 지역명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 ② 급별 : 초, 중, 고, 특수, 각종
 - ③ 학급수 : 2026. 4. 1. 기준
 - ④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학생 현황: 학생현황 및 관리방법 통계자료
 - ⑤ 선택식단운영 현황:학교별 운영현황 통계

[서식14-1]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급식 신청 (수업일의 점심시간 외)

1. 급식현황

[단위 : 명]

지역	학교명	공사립	조리방식	학급수	학생수	급식인원수				기숙사 운영 (O,X)	비고
						조	중	석	계		
○○	○○고	00	단독								예시)

2.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현황

학교명	위탁운영 기간	구분	급식인원(명)				불가피한 사유		교육공무직 의견수렴 여부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여부	2025년 위탁여부 (O,X)
			조식	중식	석식	계	①	②				
		학기중 조,석식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										

※ 운영 기간 : 0000.00.00 ~ 0000.00.00

※ 급식인원 : 운영기간 중 예상인원 수

※ 불가피한 사유 해당칸에 모두 “○” 표시

① 조식, 석식, 주말, 방학 중 급식운영에 따른 조리종사자 교대근무 체계 마련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② 급식인원수 부족으로 현격한 급식비단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급식운영이 어려운 경우

※ 의견수렴, 심의여부 : 해당칸에 모두 “○” 표시

※ 제출기한 : 2026. 12. 4.까지 에듀파인으로 제출

3.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 교육공무직, 학부모 의견수렴 내용 포함하여 작성

[서식14-2]

수업일의 점심시간외 위탁급식 신청현황

번 호	지 역 명	학 교 명	설 립 년	조리 방식	학 급 수	학 생 수 (명)	기 사 영 부 숙 운 여	위탁 급식 인원수(명)									불가 피 사 유		의견수렴			2025년 위탁 여부	비 고
								학기중			주말			방학중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석식	①	②	공 무 직	학 부 모	학 운 위		

- ☐ 작성대상 : 고
- ☐ 제출기한 : 2026.12.10.
- ☐ 작성방법 : 서식 14-1. 학교별 신청현황으로 작성
서식 14-1, 14-2 모두 제출

[서식15-1]

2026년(1 ~ 12월)후드 등 위험시설 대청소 전문업체 위탁 현황(교육지원청)

지역명	대상 학교 수	후드 등 위험시설 대청소 전문업체 위탁 현황				연4회 미실시 사유	비고
		연4회	연3회	연2회	연1회		
수원	200	170	20	5	5	현대화사업, 시설개선공사: 20교 신설: 10교	예시
고양	100	87	10	2	1	현대화사업, 시설개선공사: 10교 신설: 3교	예시

※ 작성요령

- ☐ 작성대상 : 단설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조리교
- ☐ 제출기일 : 2026. 10. 30.
- ☐ 작성방법 : 서식 15-2 학교별 자료 취합 후 횡수별 학교수 기입
서식 15-1, 15-2 모두 제출
- ☐ 작성기준일: 2026. 12. 31. 기준으로 작성(실시 예정 포함하여 작성)

[서식15-2]

2026년(1 ~ 12월)후드 등 위험시설 대청소 전문업체 위탁 현황(학교)

번호	지역명	공사립	급별	학교명	후드 등 위험시설 대청소 전문업체 위탁 현황					연4회 미실 시 사유	비고
					연4회	연3회	연2회	연1회	소요예산 (단위:천원)		
1	수원	공립	초	○○초			○		1,600	시설개선공사	공사기간: 1월 ~ 5월
2	고양	공립	중	○○중	○				2,000		예시
3	안양과천	사립	고	○○고				○	5,000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3월 ~ 8월
4	안산	공립	단설 유	○○유	○				1,000		예시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단설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조리교

□ 제출기일 : 2026. 10. 23.

□ 작성방법 : 실제 위탁 횟수에 0로 표기

※ 현대화공사 등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 비고란에 xx월 ~ xx월 공사기간 기재

□ 작성기준일: 2026. 12. 31. 기준으로 작성(실시 예정 포함하여 작성)

[서식16]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illegible]

※ 작성요령

※ 참여 학교 현황(2026년 3월 기준)

1. 보고기일: 2026. 4. 2.

2. 지원식재료 품목

가. 공동구매, 지원사업 품목을 기재

나. 식재료 품목별로 나누어 참여학교 현황 등 각각의 항목 작성

3. 운영형태

가.통합직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행정기능과 물류,유통,전처리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형

나. 통합위탁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행정기능과 유통 및 물류기능을 통합하여 비영리 또는 공공성을 지닌 단체 등의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행정,물류, 전처리,유통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

다.부분위탁형: 지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물류, 유통, 전처리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기능 수행하는 유형

라. 행정형: 지자체는 행정기관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동 센터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인증과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서식17]

학생주도 학교급식 활동 참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현황

①지역 교육지원청	②학교급	③학교수 (비조리교 및 분교포 함)	④학생 학교 급식 활동 참 여 학교수	⑤학생 학교급식 활동 참여 내용									⑦음식물쓰레기줄이기 교육활동				
				학교급식소 위원회 위원	학생 자치회 (교육급식부 등)	급식 토론회	학생 모니터링	식단협의	질서지도	배식봉사	생태환경관 련 캠페인 등 교육활동	기타	⑥ 음식물쓰 레기줄이기 교육 참여 학교수	교과연계 수업	창체연계 활동 및 수업	잔반없는 날 운영	기타
수원	초																
수원	중																
수원	고																
수원	특수																
수원	각종학교																
합계																	

※ 작성요령(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확인-학교별 백데이터 함께 제출)

- 작성대상: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전체(비조리교 포함)

- 제출기일 : 2026. 9. 4.

① 지역교육지원청 :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등

② 급별 : 초, 중, 고, 특수, 각종, 통합

③ 학교수(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수)

④ 학생 학교급식 참여 학교수 : ⑤번 참여활동 중 한 개 이상 참여학교 수

⑤ 학생 학교급식 참여 주요 활동 (1~9)

1.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활동

2. 학생자치회 연계활동 (교육급식부 등)

3. 급식토론회

4. 학생 급식모니터링 활동

5. 식단협의 활동 (희망급식의 날 등)

6. 학생 질서지도 활동

7. 학생 배식 봉사활동

8.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생태·환경 관련 활동

9. 기타

[서식18]

신설학교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급식시설 추진사항 보고

지역명	급별	학교명	급식 인원 (명)	사업명	급식개시 (예정)일	조리(실무)사 인원수(명)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쾌적한 공간 및 능률적 급식시설 확보(예정)(○,×)								비고
							시설비	기구비	계	충분한 휴게공간 (휴게실 면적 m)	공조 시스템	위생관리 시스템	자동그리스트 램핑화장치	오븐기	에어 세척기	살균수 제조장치	기타	
수원시	초	00초		현대화사업	2026-09-01			580,000	580,000	22	○	○		○	○	○	종명	

1. 제출대상: 신설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대상(단설유,초,중,고,특수) 소재 교육지원청(※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보고)
 2. 작성요령: 신설학교, 현대화사업 학교의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준공 과정의 사업 모두 작성
(예, 상반기 설계완료, 하반기 공사 중인 경우는 상·하반기 모두 제출)
 3. 제출시기: 2026. 6. 26./2026. 12. 30.
- ※ 신설학교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쾌적한 공간 및 능률적 급식시설 및 기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4. 급식인원: 신설학교의 경우 완성학급 기준 인원수 작성
 5. 기구비 : 신설학교의 경우 기구비만 작성

[서식19]

학교급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급별	학교명	운영방식 (직영,위탁)	조리방식 (조리,비조리)	배식방법 (교실,식당,병행)	전체 학생수	응답자수		비고
							학생	[설문조사(응답자)수/전체학생수]×100(%)	
예시)									

※ 작성요령

- 1) 학생 응답자수는 전체학생수 30%이상 실시 권장(예시: 300명/1000명*100=30%)
- 2) 분교는 제외, 모든 급식학교 작성 요함(병설유치원, 비조리교의 급식 수요자 의견 반영하여 개선 조치 필요)

[서식20]

학교급식 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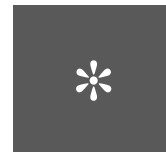
[illegible]

※ 작성요령

- ☐ 작성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 작성기준 : 2026. 3. 1.
- ☐ 설치년도가 여러개일 경우에도 한셀에 입력(행 추가 금지)

미래를 열어나가는 학교급식

chapter



참고자료

[참고자료 1]

- 2026년도 ○○시(군) 학교급식비 교육경비 보조사업 -
추진결과 정산서 [예시]

학 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조사업명	0000년 학교급식(무상) 지원			
사 업 기 간	0000. 00. 00 ~ 0000. 00. 00			
정산담당자	성 명		연락처	
시(군)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사업비				
집 행 내 역	세 부 내 역	“ 불 임 ”		
○○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조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무상) 지원금에 대해 정산 및 집행결과를 제출합니다. 첨 부 : 학교급식 지원금 정산보고서 년 월 일 대 표 자 : 학교장(직인) ○○시장(군수) 귀하				

학교급식(무상) 지원금 정산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학 교 명 : ○○초·중·고등학교
- 사업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비 지원
- 보조금수령일 : 0000. 00. 00
- 급식현황

(단위 : 명, 원)

학년별	학 생 수			급식일수	급식단가	급식비 집행액
	계	전체학생수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수			
계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2. 사업비 정산

- 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a)	집 행 액				잔액(a-b)	비고
	시·군보조금	교육정보조금	기타	계(b)		
450,000,000	200,000,000	200,000,000	50,000,000	450,000,000	0	

- 시(군)보조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시보조액 (a)	시보조 집행액 (b)	시보조 집행잔액 (a-b)	비고

※ 집행잔액 : 총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시보조 잔액 발생금액(대응비율 준수하여 집행잔액 산출)

※ 작성시 예금이자 비고란에 기재 요망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이자 포함)

(단위 : 원)

집 행 잔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3. 시보조 지원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명, 원)

월별	지원 학년	지원 인원수	지원 일수	지원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고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소계		
	계									
1월	1~6학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학년별 급식일수가 다른 경우 비고란에 학년별 분리 표기 요망.

※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지출부 제출은 지양(시,군별 협의 후 처리)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요약 및 자체평가 결과

- 실적 및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간략히 기재

[참고자료 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 교육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시행방법

-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참고자료 3]

학교급식 관련 법규

▣ 집단급식소

내 용	관 련 법 규	위반시 조치사항 (행정처분)
■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기준 위반 •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 미 준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위생모 미착용 • 기계·기구 미소독	식품위생법 제3조, 제88조, 제101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00조 별표27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50만원
■ 식중독 발생 미보고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500만원
■ 식중독 발생시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8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영양사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취소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1회 과태료 500만원
■ 건강진단 미 실시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60만원
■ 위생교육 미 실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60만원
■ 위탁계약한 사항이외 영업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해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II.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 나. 위탁급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2개월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 일부항목: 1년마다(전항목검사연도제외) • 전항목: 2년마다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 보존식 미보관 •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400만원
■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위생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0만원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자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300만원
■ 영양사를 두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52조, 제96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내 용	관 련 법 규	위반시 조치사항 (행정처분)
■ 조리사(면허증소지자)를 두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운영부분

내 용	관 련 법 규	위반시 조치사항 (행정처분)
■ 방역기간 미준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4항 별표7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LPG) 정기검사 미실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200만원 이하 벌금
■ 액화천연가스(LNG) 정기검사 미실시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 미신고 운영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2항, 제73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조종사 선·해임 미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7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 덤웨이터 정기점검 미실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6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비치 미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 기록 보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68조3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 폐유 보관기관 미준수, 적정 보관 장소와 보관용기 사용, 보관 표지판 설치 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위반 정도별로 과태료 책정이 달라짐

※ 위에 명시한 각 항목별, 내용별 위반시 조치사항(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및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학교급식법 제23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벌칙규정을 적용함

[참고자료 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조례

연번	조례명	목 적	시행일
1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24. 3. 20. 2024. 3. 20. (전부개정)
2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22. 4. 21.
3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19. 3. 13. 2024. 7. 17. (일부개정)
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 식품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함	2020. 7. 15.
5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21. 10. 6.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2023. 10. 11.
7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실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4. 5. 16.

※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현행자치법규](#) 에서 검색 가능

[참고자료 5] <학교급식 설문조사(안)>

학교급식 설문조사(안)

본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학교급식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급식 운영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응답자 정보(분류를 위해 필요합니다.)

(☞ 응답자 정보는 급별(초,중,고)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응답자 성별	① 남		②여
학년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 학교급식 정보

급식관련 인력현황	영양교사/영양사 ()명 / 조리사 ()명 / 조리원 ()명		
급식시설 개선이력	예) 2003년 학교 개교 및 급식소 준공 2010년 급식소 개·보수		
급식인원	총 ()명 (학생: 명 / 교직원: 명 / 기타:)		
식재료 정보	예) 친환경(G마크): 농산물 G마크 우수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국산 가공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배식방법			
급식비 / 1식	원	식품비/1식	원

※ 조사지 작성 전 앞페이지의 학교급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자녀의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각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를 보기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지 작성 전 앞페이지의 학교급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자녀의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각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를 보기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설문조사 (학부모)

※ 학교별 여건에 맞게 설문 문항 조정. 윤영

※ 조사지 작성 전 앞페이지의 학교급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각 내용을 읽고 정도를 보기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학교급식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026년도 기본방향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준)	2026년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	기본방향 ▶ 학생의 건강한 삶과 기본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통합지원 정책목표 ▶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 건강중심 교육급식과 학생주도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정책 추진 방향 추진목적 — 2025년 정책 추진 방향 건강과 다양성 존중의 급식운영지원 ·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을 위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 학생의 바른 인성과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 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 건강한 식생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주도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 학생이 건강한 삶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자율선택급식 정착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정책목표 ▶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선택 급식을 다양화하여 미래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주도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추진목적 —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건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실화 ·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다양화 · 학생의 바른 인성과 식생활 주도성 함양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학생 건강 맞춤형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학생 건강 맞춤형 영양·식생활관리를 위한 학교 역량 강화 지원 · 학교급식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생 주도·실천 중심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기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수정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현황 ○ (전국)2023학년도('24.2월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12,038교(100%)에서 학생 526만명 급식 실시 ○ (경기)2024년 전체학교 2,540개교(100%)에서 학생 148만 3천여명 급식 실시 2. 학교급식 위탁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가. 「학교급식법」 제 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분위탁 하거나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현황 ○ (전국)2024학년도('25.2월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12,047교(100%)에서 학생 518만명 급식 실시 ○ (경기)2025년 전체학교 2,584개교(100%)에서 학생 145만 8천여명 급식 실시 2. 학교급식 위탁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가. 「학교급식법」 제 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분위탁 또는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현행화 (P.3) 수정 (P.4) 교육부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나.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 위탁 및 부분위탁 급식학교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	나.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삭제 (P.5) 교육부
	3. 학교 단위 급식수요자 참여 확대 나.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공개의 날’ 등 급식 과정 공유를 통해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다. 도교육청 자료실 활용(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회원가입 없이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자 누구나 탑재된 자료 활용 가능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학교급식보건과) 접속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업무매뉴얼 → (초등/중등) → 제5편 학교급식 접속	3. 학교급식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강화 나.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설명회’ 등 급식 과정 공유를 통해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 학교급식 대국민 홍보사이트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운영(www.sfic.go.kr) 다. 도교육청 자료실 활용(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참조) -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자 누구나 탑재된 자료 활용 가능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학교급식보건과) 접속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업무매뉴얼 → (초등/중등) → 제5편 학교급식 접속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교육정보 → 교육급식정보누리방 접속	수정 (P.5~6) 교육부
	4.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표창 가.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4.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표창 가.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수정 (P.7) 교육부
	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및 홍보 강화 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책) 음식물쓰레기 연구용역 결과 대책 마련 ※ 학교급식 잔반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잔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2023년 도내 급식학교 음식물쓰레기발생량(62,116톤) 및 처리비용(112억원)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연구용역 결과(경기도교육청, 2015. 12월) - 학교급식 잔반실태 및 감축방안 연구 결과(경기도교육연구원현안보고 2020-01)	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및 홍보 강화 나. (현황) 2024년 도내 급식학교 음식물쓰레기발생량(61,226톤) 및 처리비용(108억원) 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책)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 - 관계기관(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협의를 통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 추진 • 지자체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공동계약 추진 • 잔식 기부 학교 관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	현행화 삭제 수정 (P.8)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준)	2026년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2015년 및 2020년 연구용역 결과(요약) · 정확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측정 및 분석 필요 · 급식담당자 역량 강화(레시피 개발, 조리종사자 조리기술 향상 등) 구축 · 체계적인 배식량 관리(샘플게시, 표준 배식도구 사용, 정확한 배식량 안내 등) · 장기적으로 식사환경 개선을 위한 식당 확충 노력(충분한 점심시간 확보) · 영양교사·영양사와 학생 및 교사간 소통을 통한 학교급식 인식 제고 · 조리원과 영양교사·영양사 및 관리자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여부 확인	－ 급식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레시피 개발, 조리종사자 조리기술 향상 등)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우수 사례 발굴·공유 ※ 경기도교육청 제작 영상* 및 자료** 참고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여부 확인	삭제 수정 (P.8)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확인 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작성과 발생량을 측정 및 기록 관리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학교급식 레시피 동영상 공모 실시 및 관련 홍보 영상 제작(2021년) － 지자체 협의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 추진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공동계약 추진 TF 운영(2022년) 8. 학교급식 설문조사 안내...(중략) 다. (방법) 년 1회 조사 실시 및 공개해야 하며 전체 학생 수 30% 이상 실시 권장	8. 학교급식 설문조사 안내...(중략) 다. (방법) 년 1회 조사 실시 및 공개해야 하며 전체 학생 수 30% 이상 실시 권장 ※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는 자율선택급식 설문조사로 갈음(추가 공문 안내)	
II.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나. (중략) － HACCP 시스템 적용기반 구축을 위해 작업공간 구획 등 리모델링 － 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연차적 계획 수립 및 지원 다. (중략)	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나. (중략) － HACCP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차적 계획수립 및 지원 다. (중략) － 학교급식 기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을 할 수 없으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적정 처리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또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불용결정 가능 · 전처리 식재료 사용으로 불필요해진 기구류 및 유사 중복 기능 기구의 구입 지양	수정 추가 (P.13) 교육부 추가 (P.14)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준)	2026년																																																															
II.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중략) －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동화기구 등 적극 도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동화 기기 설치 학교에서는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 후 설치 확대 검토(2023.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사.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를 위해 조리실 규모에 적절한 냉방시설 확보 － 조리장내 적정실내 온도는 가급적 18℃이하 유지(냉방시설 등을 통해 가능한 낮은 온도 유지)	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중략) －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기구 등 적극 도입 사.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를 위해 조리실 규모에 적절한 냉방시설 확보 － 조리장내 적정 실내 온도 유지(냉방시설 등을 통해 가능한 낮은 온도 유지) 아. 「2025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도움자료」[학교교육정책과-3971(2025.7.1.)]를 참고하여 대규모 통합운영학교는 급별 급식시설 분리 설치 검토	수정 추가 (P.14~15)																																																														
	3.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나.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2003.4월 도입) －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조·중·석식 급식관리 책임자를 각각 지정·운영 (4.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강화 조항으로 이동)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인수인계 및 보존식 보관 철저 등	3.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나. 학교급식 이외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학교급식 외부 반출 금지 － 부득이하게 외부음식 반입 시는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 및 보존식 보관 － 공동조리 운영 또는 배식하지 않은 음식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반출은 가능	삭제 이동 추가 (P.17)																																																														
	4.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강화 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중 급식원인 추정 발생 건수는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이며, 최근 건당 평균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	4.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강화 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중 급식원인 추정 발생 건수와 환자수 지속 발생	현행화 (P.18)																																																														
	<table><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 rowspan="2">전국</td><td>발생 건수</td><td>24</td><td>13</td><td>21</td><td>25</td><td>21</td></tr><tr><td>발생 환자수 (명)</td><td>1,214</td><td>401</td><td>708</td><td>1,102</td><td>978</td></tr><tr><td rowspan="2">경기</td><td>발생 건수</td><td>4</td><td>2</td><td>3</td><td>6</td><td>3</td></tr><tr><td>발생 환자수 (명)</td><td>127</td><td>46</td><td>182</td><td>303</td><td>131</td></tr></tabl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발생 건수	24	13	21	25	21	발생 환자수 (명)	1,214	401	708	1,102	978	경기	발생 건수	4	2	3	6	3	발생 환자수 (명)	127	46	182	303	131	<table><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tr><td rowspan="2">전국</td><td>발생 건수</td><td>13</td><td>21</td><td>25</td><td>21</td><td>30</td></tr><tr><td>발생 환자수 (명)</td><td>401</td><td>708</td><td>1,102</td><td>978</td><td>1,470</td></tr><tr><td rowspan="2">경기</td><td>발생 건수</td><td>2</td><td>3</td><td>6</td><td>3</td><td>7</td></tr><tr><td>발생 환자수 (명)</td><td>46</td><td>182</td><td>303</td><td>131</td><td>701</td></tr></tabl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발생 건수	13	21	25	21	30	발생 환자수 (명)	401	708	1,102	978	1,470	경기	발생 건수	2	3	6	3	7	발생 환자수 (명)	46	182	303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발생 건수	24	13	21	25	21																																																											
	발생 환자수 (명)	1,214	401	708	1,102	978																																																											
경기	발생 건수	4	2	3	6	3																																																											
	발생 환자수 (명)	127	46	182	303	131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발생 건수	13	21	25	21	30																																																											
	발생 환자수 (명)	401	708	1,102	978	1,470																																																											
경기	발생 건수	2	3	6	3	7																																																											
	발생 환자수 (명)	46	182	303	131	701																																																											
	※ 주요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 신학기인 3월·9월, 여름철 6월·7월에 다수 발생 (중략)	※ 주요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 급식이 시작되는 신학기 및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다수 발생 (중략)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II.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라. 초동단계 신속 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즉시 가동,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 치 강구 마. 보존식 보관 및 관리 철저 - 보존식은 -18°C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관, 사고발생 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 -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 설치 - 보존식 보관시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 ※ 조리·제공된 매회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담아 -18°C 이하에서 144시간(6일)이상, 냉동보관(「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5차 개정판의 '보존식' 참고) - 역학조사 관계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책임소재 명확화 바. 학교 식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역학조사 결과 및 책임소재에 따라 위탁급식업체,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 관계자 및 조리종사자에 대해 계약해지, 치료비 등 손해배상,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 철저	라. 초동단계 신속 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즉시 가동,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 치 강구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업무에 활용 마. 보존식 보관 및 관리 철저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 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 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조리·제공된 매회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담아 -18°C 이하에서 144시간(6일)이상, 냉동보관 바. 학교 식중독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추가 수정 (P.19~20) 교육부
	6.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가.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 튀김요리 등 준비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 전기기계·기구 등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조리기기 사용 시 근로자 이탈금지, 소화기 배치 등 안전 사고 예방관리 철저(학교급식협력과 -3923, '20.10.12. 참조) - (중략) -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오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튀김·구이·부침 등 조리 횟수 조정/튀김류는 주 2회 이하 권장) ※ 단, 급식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기(6~9월) 튀김·전 요리는 오븐을 이용하여 조리하고 식용유 가열, 부침기 사용은 주1회 이하로 운영 권장	6.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가.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 튀김요리 등 준비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 전기기계·기구 등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조리기기 사용 시 근로자 이탈금지, 소화기(K급)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학교급식보건과 -3760, 2025.6.19. 참조) - (중략) -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오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튀김·구이·부침 등 조리 횟수 조정/튀김류는 주 2회 이하 권장) ※ 단, 급식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기(6~9월) 튀김·전 요리는 오븐을 이용하여 조리하고 식용유 가열, 부침기 사용은 주1회 이하로 운영 권장	수정 (P.21)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II.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관련근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학교안전과-5625(2023.7.6.) 나. 학교급식인력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 적극 안내 － 학교급식 인력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급식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학교급식보건과-6422(2025.7.10.)」 ※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방학 중 대청소 시 급식기구 살기 작업을 하지 않는다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나. 급식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 적극 안내 － 급식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요양 및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수정 (P.22)
III. 안전 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운영현황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현행과 같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 등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사이트 운영 (www.sfpi.or.kr)	□ 운영현황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현행과 같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 등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는 '학교급식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www.sfic.go.kr)	수정 (P.25) 교육부
	□ 추진방향 1.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다.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중략) ※ IT 기술 활용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 구축·적용 추진('18~, 시범사업 추진 중)	□ 추진방향 1.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다.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중략) ※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과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 연계('25.12월~)	수정 (P.26) 교육부
	3.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및 적격 납품업체 선정관리 철저 다. 적격 납품업체 선정 관리 철저 (중략) － 계약담당자는 급식 계약 관련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품목, 업체명, 업체주소, 계약기간, 금액, 계약방법, 원산지 등	3.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및 적격 납품업체 선정관리 철저 다. 적격 납품업체 선정 관리 철저 (중략) － 급식 계약 관련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 * 품목, 업체명, 계약기간, 금액, 계약방법 등	현행화 (P.29)
	8.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가. 친환경·GAP(농수산물이우수관리제도)·HACCP 인증품 및 지역농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8.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가. 친환경·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HACCP인 증품 및 지역농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수정 (P.32)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준)		2026년			
Ⅲ. 안전 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수정 (P.33)	
	년도	2009	(중략)	2025		
	예산(억)	24		500		
	학교수(교)	95		1,533		
	예산 편성 단가 (1식당)	초 중 고 특	140 180 - -	- - - -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				수정 (P.34)	
	년도	2007	(중략)	2025		
	예산(억)	24		226		
	학교수(교)	95		2,137		
	* 2026 본예산 기준					
Ⅳ.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운영현황 ○ (중략)				추가 (P.39) 교육부	
	○ 학교급식 오븐요리 교육자료 및 교육영상 개발보급('24.5.) ※ 오븐요리 안내자료 및 레시피북(100개 요리), 교육영상(30편), 오븐기능 안내영상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www.sfic.go.rk)-[급식일반]-[식단및레시피]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 '13.11.23)					수정 (P.40) 교육부
	5. 건강·인성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가. (중략) 나. (중략) 다. (중략) 라. (중략)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V.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2. 학생주도 실천 중심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가. 일상 속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수립·시행 －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지원 마.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 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운영(50교, 자율선택급식 선택과제 및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 추후 안내)	2. 기본 인성을 함양하는 학생주도 실천 중심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가. 일상 속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수립·시행 － 인성 핵심 가치·덕목을 키우는 급식 연계 교육활동 운영으로 기본 인성 함양 － 음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책임감 교육 －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지원 다.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 － 지역별 인근학교 단위(5~6교 정도) 연구회 구성·운영 －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식단연구, 식생활교육, 인성프로그램운영, 학생주도활동, 학교 자율활동 등 급식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 －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 (월 1회 이상)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지역교육청별 지역단위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 참여 활성화 추진 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한 인성교육, 학습 능력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홍보 － ‘아침식사 하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쌀 소비확대 협조 －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자기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애향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관심과 이해 증진 사. ‘아침식사 하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 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중심학교 운영(75교, 자율선택급식 선택과제 및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 추후 안내)	수정 (P.46) 수정 추가 (P.46~47) 수정 현행화 (P.48)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V.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3.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영양상담실 운영 - 학교 홈페이지 및 영양연구실에 '영양 상담실' 개선·운영	3.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영양상담실 운영 - 급식관리실 및 학교 누리집 등에 '영양 상담실' 개선·운영	수정 (P.48) 교육부
	4. 학생 자치 활동 연계 학교급식 운영 참여 활성화 가. 2025년 학생주도 학교급식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중략) - (학교) 학교 단위 학생 학교급식 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모색 ·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교육급식 활동 계획' 수립·운영 · 학생자치회 주관 '교육급식 소통의 날(대토론회)' 등 운영	4. 학생 자치 활동 연계 학교급식 운영 참여 활성화 가. 2026년 학생주도 학교급식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중략) - (학교) 학교 단위 학생 학교급식 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모색 ·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학교급식 활동 계획' 수립·운영 · 학생자치회 주관 '학교급식 소통의 날(대토론회)' 등 운영	수정 (P.49~50)
	5. 자율선택급식 운영...(중략) - 학생 기호도만을 고려하여 영양관리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	5. 자율선택급식 운영...(중략) - 학생 기호도만을 고려하여 영양관리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수정 (P.51)
VI. 학교 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 추진현황 ○ 학교급식경비 지원 현황 - (중략) - 2025. 03.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육 지원청 통합지급 시범 운영	□ 추진현황 ○ 학교급식경비 지원 현황 - (중략) - 2025. 03.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육 지원청 통합지급 시범 운영 - 2026. 03. 공립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육지원청 통합지급 전면 시행	현행화 (P.55)
	□ 추진방향 1. 2025년 유·초·중·고·특수(인가)대안학교 학교 급식경비(식품비및운영비) 지원 계획 나. 지원일수 : 사립유치원(203일) 다. 지원방향 : 물가상승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식품비(6%), 운영비(4.43%) 단가 인상 라. 2025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 ○ (공립)유·(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 [표] 구간별 단가 ○ (사립)유·(인가)대안학교 [표] 구간별 단가 ※ 학교급별 식품비 지원단가 가급적 준수 바. 2025년 학교급식경비 기관별 분담 비율 현황 [표] 기관별 분담 비율 현황 ※ (교특)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유·초·중·고 식품비 20.4%) 분담액	□ 추진방향 1. 2026년 유·초·중·고·특수(인가)대안학교 학교 급식경비(식품비및운영비) 지원 계획 나. 지원일수 : 사립유치원(207일) 다. 지원방향 : 물가상승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식품비(3.9%), 운영비(2.9%) 단가 인상 라. 2026년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 ○ (공립)유·(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 [표] 구간별 단가(현행화) ○ (사립)유·(인가)대안학교 [표] 구간별 단가(현행화) ※ 학교급별 식품비 지원단가 준수 바. 2026년 학교급식경비 기관별 분담 비율 현황 [표] 기관별 분담 비율 현황(현행화) ※ (교특)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유·초·중·고 식품비 20.4%) 분담액 ※ 의정부시: 2025년도 조정액 규모에 맞춰 시·군 분담비율을 상향하여 한시 분담비율 적용(추가)	수정 현행화 (P.55~59)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준)	2026년																	
VI. 학교 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사. 학교급식경비 지원 방법		사. 학교급식경비 지원 방법																
	- (중략)		- (중략)																
	※ 사립유치원은 전입·전출 반영, 학사일정(2월, 8월 포함)을 고려한 203일 지원		※ 사립유치원은 전입·전출 반영, 학사일정(2월, 8월 포함)을 고려한 207일 지원																
	- 교직원급식비는 아래 제안단가로 ... (중략)		- 교직원급식비는 아래 제안단가로 ... (중략)																
		※ 단, 학생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생 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																	
<table><tr><th>구분</th><th>유·초</th><th>중·고</th><th>비고</th></tr><tr><td>단가 (원)</td><td>4,690 이상</td><td>5,950 이상</td><td>2024년 대비 320원 인상</td></tr></table>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 (원)	4,690 이상	5,950 이상	2024년 대비 320원 인상	<table><tr><th>구분</th><th>유·초</th><th>중·고</th><th>비고</th></tr><tr><td>단가 (원)</td><td>4,970원 이상</td><td>6,230원 이상</td><td>2025년 대비 280원 인상</td></tr></table>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 (원)	4,970원 이상	6,230원 이상	2025년 대비 280원 인상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 (원)	4,690 이상	5,950 이상	2024년 대비 320원 인상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 (원)	4,970원 이상	6,230원 이상	2025년 대비 280원 인상																
• 위 단가는 2024년 교직원 기준(본예산) 제안단가에 2025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기준 1인당 평균단가(초·중 학교급식경비) 증가분의 평균을 반영하여 산출		• 위 단가는 2025년 교직원 기준(본예산) 제안단가에 2026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기준 1인당 평균단가(초·중 학교급식경비) 증가분의 평균을 반영하여 산출																	
• 학생급식비가 제안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필요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 가능		• 학생급식비가 교직원급식비 제안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필요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 가능																	
아. 학교급식경비 지원범위		아. 학교급식경비 지원범위																	
•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1식당 6,880원 한도 내		•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1식당 7,150원 한도 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비 처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비 처리																	
3)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에 등교하는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 대상자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 학교에 등교하는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 대상자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대상자의 경우: '식품비' 단가 지원		※ 위루관(의사 처방) 급식대상자의 경우: '(소속학교)식품비' 단가 지원																	
		※ 연하곤란, 경구섭취 불능 등 일반급식이 불가한 학생의 경우(의사 처방 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속학교)식품비' 단가 지원 가능																	
• 완제품 사용 승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완제품 사용 승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유동식 등 완제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여 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식품비' 단가 지원)		※ 처방약·유동식 등 완제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여 급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식품비' 단가 지원)																	
자. 급식실 현대화 공사 등으로 학교급식 중단 시		자. 급식실 현대화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영급식이 불가한 경우																	
- 위탁급식 지원단가 유 6,340원, 초 6,610원, 중·고 6.880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위탁급식 지원단가 유 6,610원, 초 6,880원, 중·고 7,150원 한도 내 지원 가능																	
2. 학교급식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2. 학교급식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나.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기준		나. 2026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기준																	
※ 차량경비 :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기준: 1일 11만원 이하		※ 차량경비 : 지역별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 지역별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수정 변경 현행화 (P.62)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VI. 학교 급식경비 지원 및 관리	3.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 지원 근거 : ————— (현행과 같음) 조리종사자 배기기준,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나. 2025학년도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 ※ 2025년 급식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계획 및 2025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참고 - 지원 기준 4대 보험료는 2025년 표준보수월액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5학년도 인건비 지원단가는 「2025년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계획」 참고 - 대체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중략)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시간당 12,500원(100,000원/일) - 신설교, 조리 전환교: 원활한 급식준비를 위해 정기 인사발령 전 (개교)준비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원(2,459천원/교) 다. 조리종사자 근무유형 - 조리종사자는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직종임. 단,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방학 중 청소일을 근무일로 하되 8일 권장, 단 8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급휴일 확대 : 단기방학과 재량휴업 일을 포함한 연4일이내의 유급휴일 부여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 일부변경 알림, 복지법무과 -640(2015.3.12.)호 참조	3.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 지원 근거 : ————— (현행과 같음) 조리종사자 배기기준,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나. 2026학년도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 ※ 2026년 급식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계획 및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참고 - 지원 기준 4대 보험료는 2026년 표준보수월액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6학년도 인건비 지원단가는 「2026년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계획」 참고 - 대체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중략) *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시간당 12,860원(102,880원/일) - 신설교, 조리 전환교: 원활한 급식준비를 위해 정기 인사발령 전 (개교)준비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원 ※ 교당 지원 금액은 「2026년 급식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계획」 참고 다. 조리종사자 근무유형 - 조리종사자는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직종임. 단, 방학 중 청소일(연간 8일을 초과할 수 없음)과 법정무교육 수강일 (여름·겨울 방학 각 1일)은 근무일로 함. 2025년 단체협약 체결·취업규칙 개정 에 따른 휴가 변경 사항 반영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 -8156(2025.11.4.)호 참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 -10191(2025.12.31.)호 참조	수정 (P.62) 수정 변경 현행화 (P.63)
VII.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3. 학교급식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지원 다.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경우 검수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 하지 않으며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3. 학교급식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지원 다.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경우 검수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며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지급	현행화 (P.68)

구분	변경사항		비고
	2025년(기존)	2026년	
Ⅶ.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마. 조리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 (중략) - 조리작업을 줄이고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 (예시) 오븐기, 야채절단기, 애벌세척기, HACCP자동화시스템, 살균수제조장치, 자율 배식대, 자동교반기, 자동컵세척기, 행주 삶는 기계, 조리 로봇 등 바. 학교급식 인력 근무여건 개선 - (중략)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중략) ※관련근거: 「2021년 4분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이행 철저」 학교안전기획과-208(2022.1.6.)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마. 조리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 (중략) - 조리작업 효율화 및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현대적 급 식기구* 확충 * (예시) 오븐기, 야채절단기, 애벌세척기, HACCP자동화시스템, 살균수제조장치, 보온 보냉 배식대, 자동교반기, 자동컵살균세척기, 행주 삶는 기계, 조리 로봇, 잔변리프트 등 바. 학교급식 인력 근무여건 개선 - (중략) - (중략)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학교 전체 대청소를 진행하는 경우(연 1회 이상) 식당 바닥을 포함하여 진행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현행화 삭제 수정 추가 (P.69~70)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가. (중략) 나.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준수 5. 학교급식 운영개선 가.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지적 사항 개선...(중략) -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식당 별도 운영 지양 - 위생복 및 장화는 년 2회 이상 지급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5조, 116조.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가. (중략) 나.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준수 5. 학교급식 운영개선 가.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지적 사항 개선...(중략) -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배식대 /식당 별도 운영 지양 - 위생복 및 장화는 년 2회 이상 지급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17조, 118조.	
			현행화 수정 (P.70~71)